

納稅者權利憲章의 制定方案

序 言

근래에 美國·프랑스 그리고 英聯邦諸國을 비롯한 선진 각국은 租稅行政節次의 적정화·투명화를 통하여 納稅者의 權利를 保護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의 선진화·민주화를 위하여 納稅者權利憲章을 制定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稅制 및 稅政은 경제·사회발전에 필요한 財源調達과 政策實現의 手段으로 활용되는 데 치중되어 租稅行政에 관한 節次規定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납세자의 의무를 강조·확인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納稅者의 基本權이 상당히 侵害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납세자의 지위는 과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劣位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근래에 國稅廳은 일선 세무서 민원실에 납세자 苦衷相談 體系를 구축하고 「稅務公務員 倫理綱領」, 「課稅適否審查制度」 및 「稅務調査 運營準則」 등을 제정하여 納稅者 權利保護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苦衷相談의 대상이 극히 실무적인 몇 가지의 경우로 제한되어 있고 「稅務公務員 倫理綱領」, 「課稅適否審查制度」 및 「稅務調査 運營準則」 등은 국세청의 內部規定으로 제정·운영되므로 法的 拘束力을 지니지 못하는 심각한 缺陷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納稅者權利憲章」을 제정·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研究의 必要性을 인식하고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本 報告書는 納稅者의 權利保護와 관련된 制度의 現況을 分析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 외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납세환경에 적합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政策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納稅者의 權利가 实效性 있게 保護되기 위해서는 우선 「國稅基本法」 내에 ‘납세자 권리’라는 새로운 장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비밀보호, 중복 조사의 금지, 고지심사제도, 과세적부심사제도, 세무대리인 의뢰권, 세무조사의 이유 및 결과의 서면통지 등을 규정하고 國稅廳長은 「國稅基本法」의 규정에 의하여 「納稅者權利憲章」을 制定·公布할 필요성이 있음을 本 報告書는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本 보고서는 租稅節次法 制定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서는 長期的인 計劃을 통해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정보공개 및 사생활보호법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각 세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절차관련 조항의 統攝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本 연구원의 鄭暎憲 博士와 朴釘洙 博士가 집필하였으며 金正絃·徐廷珠 연구원과 吳美順 연구조원이 원고정리를 도와주었다. 필자들은 本 보고서의 草稿에 대해 유익한 論評을 해준 全縱九 辯護士와 李銓午 辯護士께 感謝의 뜻을 표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필자들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本 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1996年 6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崔 洸

目 次

I. 納稅者權利憲章 制定의 必要性	9
II. 納稅者 權利保護의 現況과 問題點	11
1. 納稅者 權利保護를 위한 現行 制度	11
2. 納稅者 權利救濟의 現況	27
3. 問題點	29
III. 主要國 納稅者權利憲章의 概要	32
1. 美國의 「納稅者權利憲章」	32
2. 英國의 「納稅者憲章」	34
3. 캐나다의 「納稅者權利宣言」	36
4. 프랑스의 「納稅者憲章: 調査받을 때 귀하의 權利와 義務」	38
5. 뉴질랜드의 「納稅者의 權利와 義務」	39
6. 日本의 納稅者權利憲章 制定에 관한 動向	44
IV. 租稅節次法의 制定 檢討	47
1. 租稅行政에 있어서 適正節次의 意義	47
2. 主要國의 納稅者 權利保障을 위한 租稅節次法	48
3. 우리나라의 租稅節次法 制定方案	53
4. 納稅者權利와 義務의 均衡摸索	64
V. 納稅者權利憲章 制定의 基本方向	67
1. 納稅者權利憲章 制定의 形式	67

2. 「納稅者權利憲章」에 포함되어야 할 內容	71
VI. 結論 및 要約	76
參考文獻	78
〈附 錄〉	81

表 目 次

〈表 II-1〉 調査區分別 調査期間	25
〈表 II-2〉 國稅關聯 異議申請 및 審査請求 處理實績	28
〈表 II-3〉 稅目別 行政訴訟事件	28
〈表 III-1〉 日本의 納稅者權利憲章 制定에 관한 움직임 事例	44
〈表 IV-1〉 現行 稅法上 稅務調査 關聯 規程	56
〈表 V-1〉 納稅者權利憲章의 制定形式	68
〈表 V-2〉 主要國 納稅者權利憲章의 比較	72
〈附表 I-1〉 納稅者權利憲章의 有無	83
〈附表 I-2〉 納稅者 案内內容	84
〈附表 I-3〉 稅制 適用의 原則	85
〈附表 I-4〉 課稅 決定事項의 變更原則	86
〈附表 I-5〉 음부즈맨 制度	87
〈附表 I-6〉 納稅者資料의 利用 規則	88
〈附表 I-7〉 秘密保障	89
〈附表 I-8〉 秘密保護	90
〈附表 I-9〉 納稅者의 損害賠償	91
〈附表 I-10〉 租稅減免의 納期 後 申請	92
〈附表 I-11〉 行政訴訟의 法定費用 配分規則	93
〈附表 I-12〉 租稅赦免	94

圖 目 次

[圖 II-1] 納稅者의 權利 救濟節次 흐름도	27
---------------------------------	----

I. 納稅者權利憲章 制定의 必要性

우리나라의 憲法은 「모든 國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第38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定한다」(第59條)라고 規定함으로써 租稅法律主義를 宣言·採擇하고 있다. 租稅法律主義의 窮極의 目標은 國民의 基本權, 즉 納稅者의 基本權을 積極的으로 保障하는 것이다. 租稅法律主義의 모든 내용들이 納稅者의 基本權을 保障하기 위해 直接·間接으로 影響을 미치고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納稅者의 基本權을 實質的으로 保障하기 위한 積極的이고 具體的인 制度的 裝置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稅制 및 稅政은 조세를 거두는 국가 입장에서 經濟·社會發展에 필요한 財源調達과 政策實現 手段으로 활용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조세를 실제 납세하는 국민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등한히 취급되어 納稅者의 基本權이 많이 침해되어 왔고 아직도 納稅者의 지위는 과세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劣位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종래의 租稅行政에 관한 절차법 내지 절차규정은 納稅者의 권익을 옹호하기보다는 주로 納稅者의 義務를 強調 또는 確認하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선진 각국은 稅務行政節次의 適正化·透明化를 통하여 納稅者의 권익을 보호·신장하고 아울러 納稅者權利(taxpayers' rights)를 보장·확립하는 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納稅者의 권익 보장에 관한 절차규정들을 도입함과 동시에 納稅者의 권리선언 내지 納稅者權利憲章을 발표함으로써 정부 또는 課稅官廳 스스로가 숭선하여 納稅者權利의 確立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歐美 各國들은 「納稅者權利保障法」 또는 「納稅者權利憲章」 등을

선포하여 적극적으로 納稅者의 權利를 保障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고 있다.

自發的 納稅協力 수준이 저조한 우리나라의 現實을 감안할 때 「納稅者權利憲章」을 制定하는 것은 稅政執行의 유연성을 硬直시켜서 納稅協力 수준을 더욱 저하시키는 副作用을 초래할 可能性이 높다는 지적도 있으며 이러한 지적이 상당히 說得力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稅政執行의 유연성을 통해서 자발적 納稅協力 수준을 提高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行政便宜主義的인 發想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저조한 自發的 納稅協力 수준의 原因이 바로 稅政執行의 광범위한 自意性(柔軟性)에 기인한다는 점을 直視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自發的 納稅協力 수준을 提高하기 위해서는 納稅者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保護하여 성실한 納稅者에게는 납세서비스를 增進하고 權益을 옹호하여 納稅協力 수준을 더욱 提高하고, 불성실한 納稅者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節次 및 方法에 의해 稅務調査를 강화하여 自發的 納稅協力 수준을 提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화를 國政指標로 정하고 정치·경제·사회적 모든 영역에서 국제화·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稅務行政 개혁의 의지를 표명하고 향후 納稅者 中心의 행정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에서 성실한 納稅者가 자율적으로 자기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산하고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納稅者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納稅者權利憲章」을 제정·공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Ⅱ. 納稅者 權利保護의 現況과 問題點

1. 納稅者 權利保護를 위한 現行 制度

歐美 각국에서는 최근 들어 納稅者 權利保障을 具體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納稅者의 權利保障을 위한 法律 또는 憲章을 制定하였다. 예를 들면 영국은 1986년에 「納稅者憲章(Taxpayer's Charter)」을, 캐나다는 1985년에 「納稅者權利宣言(Declaration of Taxpayer Rights)」을, 미국은 1988년에 「納稅者權利保障法(Your Rights as a Taxpayer)」을, 프랑스는 1974년에 「稅務調査에 관한 憲章(Charte du Contribuable-Vos droits et obligation lors d'une vérification)」을 제정하였고 일본은 국가차원에서는 아직 制定된 바 없지만 민간 團體들이 納稅者權利憲章 또는 法 制定의 必要性을 지적하고 그 試案을 發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制憲憲法에서부터 租稅法律主義를 採擇한 지 50여년이 가 까워 오지만 아직도 納稅者 基本權의 保障은 未洽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納稅者 基本權을 積極적으로 保障하기 위한 制度는 아직 없으며 學問的 研究도 아직은 미흡한 상태이다. 國稅廳에서 자체적으로 推進하고 있는 納稅者 保護 관련 措置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現在 각 稅務署의 民願室에서 納稅者의 苦衷을 덜어주기 위하여 相談하고 있는 것이며 둘째는 國稅廳에서 산하 職員들의 紀綱을 確立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발표한 「稅務公務員 倫理綱領」이고 셋째가 國稅廳 訓令으로 제정된 「稅務調査 運營準則」이다. 이하에서는 이들 세 가지 조치 중에서 納稅者 基本權 保護에 關聯되는 部分만을 살펴 보고자 한다.

가. 稅金苦衷處理 相談制度

1) 稅金苦衷處理相談의 對象 및 節次

苦衷處理 對象은 당초의 처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違法·不當하거나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또는 당초의 事實調査나 確認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며, 國稅基本法에 의한 不服請求(異議申請·審査請求)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苦衷處理 申請 및 節次를 살펴보면 고충처리는 書面·口頭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신청가능하고 민원봉사실장이 직접 접수하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된다.

2) 國稅廳의 「稅金苦衷處理制 運營指針」

가) 運營方向

- ① 國稅基本法에 의한 불복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고도 직권 시정이 가능한 세금에 관련된 고충을 신속, 과감히 시정 조치함으로써 국민이 稅務行政에 대하여 信賴를 갖도록 한다.
- ② 부과된 세금에 대한 사후구제에 국한하지 않고 稅務行政 執行過程에서 발생하는 모든 苦衷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납세자가 개별적인 소개나 부탁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어려움이 民願室에서 종결되도록 운영한다.
- ③ 訓諭, 指針 등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稅政執行으로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이 소홀히 취급됨으로써 발생하는 고충은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지침 등을 보완하여 苦衷發生素地가 없도록 한다.
- ④ 納稅者의 稅政上 모든 고충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奉仕姿勢를 확고히 하고, 공평 무사한 업무처리로 그 과정과 결과를 누가 보든지 公正하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야 한다.

나) 苦衷處理 對象

苦衷處理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苦衷事項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對象은 다음과 같다.

- ① 당초의 處分, 處理, 要求內容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 부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예시)
住民登錄番號 기재 착오로 타인 소득이 合算 課稅되어 그 소명자료를 납세자에게 요구함으로써 負擔을 주는 경우 등
- ② 당초의 處分, 處理, 要求內容이 현저하게 衡平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예시)
事業體 不渡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한 긴급 조세채권 확보시 관련 증빙의 제출이나 확인이 지연된다고 하여 推計決定함으로써 과다한 세부담을 지우는 경우 등
- ③ 당초의 事實調查나 확인이 미진하여 再調查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예시)
실제 3년 이상 거주한 住宅을 讓渡하였으나 주민등록전출입 신고를 적기에 하지 아니함으로써 公簿上 3년 미만 거주로 되어 讓渡所得稅를 부담하게 된 경우 등
- ④ 당초의 처분이나 처리시 指針, 基準 등에 의하여 劃一的으로 집행함으로써 개별적인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基準適用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인이 미진하여 再調查가 요구되는 사항
(예시)

課稅特例者の 매입금액 중 재고분을 감안하지 않고 買入資料金額 전액을 매 출로 환산하여 課稅 조치한 경우 등

- ⑤ 과세된 稅額과 직접 관련이 없으나 稅務行政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고충사항

(예시)

- i) 다른 財産을 압류하여 租稅債權 確保가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財産을 押留하여 불편을 주는 경우
- ii) 財産諸稅 관련 안내문을 받고 무슨 證憑을 어떻게 갖추어야 할지를 몰라 당황해 하는 경우 등

- ⑥ 苦衷事項의 내용이 직권으로 시정할 수는 없으나, 異議申請, 審査請求, 審判請求의 대상이 되는 사안일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상세히 지도,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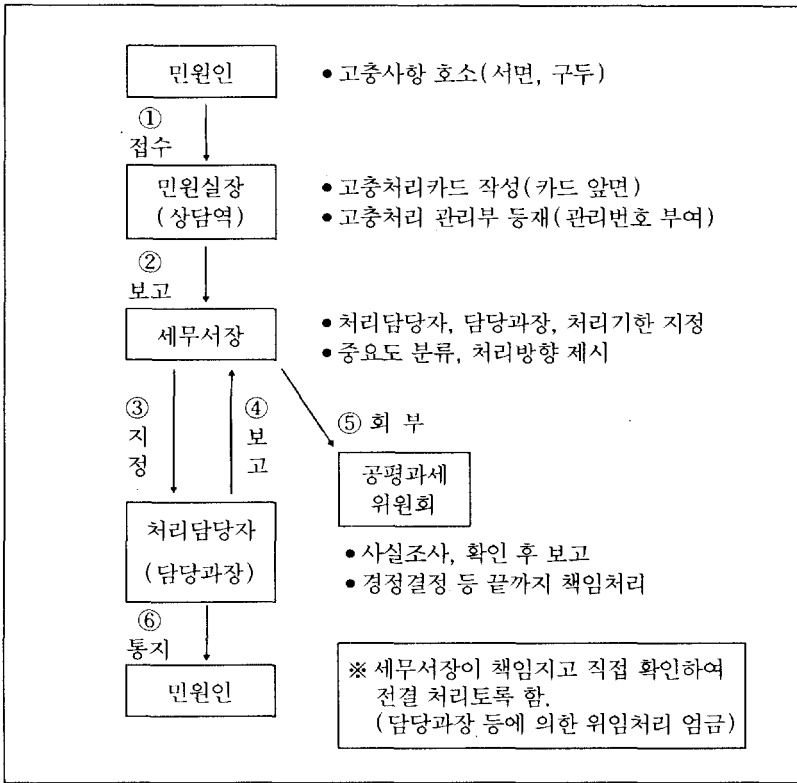
(예시)

法令解析의 어려움 등으로 직권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 ⑦ 國稅基本法 등에 의하여 불복절차를 경유중이거나 완료하여 확정된 사안은 苦衷處理 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심사청구에서 기각된 사안을 苦衷處理로 직권 시정할 수는 없다.

다) 苦衷處理 節次

(1) 苦衷處理 業務의 흐름 및 節次



(2) 段階別 處理節次

(가) 苦衷事項의 接受

모든 苦衷은 민원봉사실장(상담역)이 직접 접수하며 호소방법은 書面, 口頭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하다. 고충이 접수되면 민원봉사실장은 즉시 苦衷處理카드를 작성하고 苦衷處理 管理簿에 등재한다.

(나) 報告 및 處理類型 分類

민원봉사실장은 접수한 苦衷事項을 즉시 고충처리카드에 의하여 稅務 署長에게 보고한다. 고충내용을 보고 받은 세무서장은 고충사안별로 다 음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 ① 명백한 不當事項으로 직권 시정이 필요한 사항
- ② 事實 確認이 필요하고 신증을 기해야 할 사항
- ③ 制度改善 사항으로서 上級機關에 건의해야 할 사항
- ④ 기타

(다) 處理擔當者 및 處理期限 指定

세무서장은 苦衷事案에 따라 처리담당자와 처리기한을 지정하고 다음 구분에 의하여 처리방향을 제시한다.

- ① 명백한 不當事項으로 직권 시정이 필요한 사항 : 담당과장 또는 주무자를 처리담당자로 지정하여 즉시 직권 시정하도록 한다.
- ②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신증을 요하는 사항 : 苦衷內容을 감안하여 處理擔當者(가급적 당초 처리자가 아닌 자)와 擔當課長을 지정하여 기한 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處理期限은 처리 가능한 最短期日로 지정한다.
- ③ 制度改善 事項(훈령, 지침 개정사항 포함)으로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할 사항 : 지정받은 담당과장이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보고한다(苦衷處理 實績報告時 添附 報告).

緊急을 요하는 사항은 검토 결과를 즉시 地方國稅廳長(國稅廳長)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 조치한다.

(라) 處理擔當者의 確認 및 處理

稅務署長의 指示內容에 따라 타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확인, 조사 또는 직권 시정 조치한다. 타 세무서(타방청)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협조를 얻어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한다.

(마) 苦衷事案의 優先協助

苦衷事項의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구받은 稅務署長(지방청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國稅廳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고, 국세청의 해당 실·국·과장은 신속한 조치를 하여 遲延 處理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바) 調查結果 報告

處理擔當者(擔當課長)는 지정된 기한 내에 調查·確認結果를 세무서장에게 보고한다. 직권 시정 조치의 경우에는 更正(再更正)決意書에 의거하여 종결 처리한다.

(사) 處理結果 通知

處理擔當者는 처리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書面으로 통지한다. 관련 기관 협조 등의 사유로 당초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進行狀況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아) 公平課稅委員會 回附

公平課稅委員會 회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苦衷關聯 稅額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민원
- ② 苦衷關聯 稅額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신증을 요하는 사항이거나, 세무서장이 同 委員會에 回附 處理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세무서장은 처리담당자의 確認·調查結果 보고를 받은 후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公平課稅委員會에 회부한다.

(자) 公平課稅委員會의 審議處理

이는 공평과세위원회의 設置 및 運營規則(국세청 훈령 제528호, 1976. 4. 29)에 의한다.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은 세무서장이 委員長이 되며 委員은 각 과장 및 민원봉사실장이 맡고 幹事는 처리담당자가 된다.

3) 問題點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國稅廳은 各 稅務署 民願室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 納稅者의 苦衷을 相談해 주고 있다.

- ① 稅法에 대한 知識不足으로 인하여 稅金을 과다 納付한 경우
- ② 明白하게 違法·不當한 課稅處分임에도 不服請求(異議申請·審査

請求·審判請求) 期間의 經過로 救濟받지 못한 경우

- ③ 帳簿의 記帳能力이 없어서 실제보다 많은 收入金額을 推計決定받은 경우
- ④ 事實에 대한 證據를 提示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稅金을 負擔한 경우
- ⑤ 其他 零細한 納稅者가 억울하게 權利侵害를 당한 경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무서 민원실에서 시행하는 納稅者의 苦衷相談은 그 대상을 극히 實務的인 몇 가지 경우로 制限하고 있어 전체적인 納稅者 權利保護에는 한계가 있다.

나. 「稅務公務員 倫理綱領」

國稅廳은 國家財政需要의 원활한 調達과 稅務公職紀綱의 엄정한 確立을 도모하고자 國稅廳 訓令 제1143호(1993. 4. 2)로 「稅務公務員 倫理綱領」을 發表하였다. 前文과 7章 33條로 構成된 이 「稅務公務員 倫理綱領」은 대부분 세무공무원의 清廉義務를 規定하고 있는데 納稅者 基本權保障에 관련이 있는 條項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前文의 내용-「國稅行政의 基本任務는 國家財政需要의 圓滑한 調達이며 이를 完遂하기 위하여는 國稅行政이 公正·妥當·透明하다는 國民의 전폭적인 信賴를 바탕으로 納稅義務를 自律的으로 誠實 履行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稅務公職者가 높은 수준의 倫理意識을 堅持하고 親切·謙遜하며 良心的이고 誠實하게 稅政業務를 수행해 나갈 때 稅政에 대한 國民의 信賴를 얻을 수 있음에도 일부 稅務公職者의 不誠實하고 沒知覺한 행위로 인하여 대다수 善良한 稅務公職者들이 쌓아 올린 國民의 信賴가 毀損되고 있다. 이제……우리는 과거의 오랜 惰性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깨끗하고 誠實한 公職者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에 稅務公職者가……높은 수준의 倫理意識을 항상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本 稅務公務員 倫理綱領을 制定하는 바이다…….」

- ② 業務不當處理 禁止 - 모든 職員은 職務를 遂行함에 있어 適法性和 妥當性 그리고 信義·誠實 原則에 입각하여 건전한 常識과 良心에 따라 迅速·正確하게 처리하여야 한다(綱領 第8條).
- ③ 誠實納稅風土 造成 - 모든 職員은 職務遂行 過程中서 納稅者와의 對話를 圓滑히 하고 稅政에 대한 納稅者의 參與機會를 넓혀 나감으로써 誠實한 納稅風土를 造成하는 데 努力하여야 한다(綱領 第10條).
- ④ 親切·公正 - 모든 職員은 禮節을 갖추고 恭遜한 言行과 公正한 姿勢로 성의를 다하여 納稅者의 權利保護와 便易爲主의 稅政을 執行하고 便安한 稅務官署 雰圍氣를 造成하도록 最善을 다하여야 한다(綱領 第11條).
- ⑤ 品位維持 - 모든 職員은 國稅廳과 稅務公職者의 名譽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容貌와 服裝을 단정히 하여 公職者로서의 品位를 維持하여야 한다(綱領 第12條).
- ⑥ 秘密嚴守 - 모든 職員은 在職中뿐만 아니라 退職 후에도 職務와 관련하여 알게 된 秘密을 嚴守하여야 하며 公務 外의 目的으로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綱領 第14條①). 모든 職員은 法令의 規定 또는 所屬官署長의 승인없이 文書나 資料를 外部機關에 提供하여서는 아니된다(第14條②). 모든 職員은 業務用 컴퓨터 또는 단말기 등을 사용함에 있어 國稅廳 전산업무운영규정과 국세데이터베이스운영규정을 숙지하여 保安에 萬全을 기하여야 하고, 정보 및 데이터를 무단 유출하거나 私的 目的으로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第14條③).
- ⑦ 業所無斷訪問 禁止 - 모든 職員은 公務出張時 出張證을 所持하고 이를 納稅者에게 提示한 후 出張業務 範圍 內에서 職務를 遂行하여야 한다(綱領 第18條).

그러나 이와 같은 規定들은 어디까지나 稅務公務員의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國稅廳 內部 職員들의 紀綱確立 및 비리척결용이지 納稅者의 基本權을 積極的으로 保障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 「稅務調查 運營準則」

國稅廳은 1989년 1월 25일 國稅廳 訓令 제1032호로 「稅務調查 運營準則」을 制定하여 稅務調查의 基本原則, 納稅者의 秘密保障, 調查對象者 선정 기준의 공개, 納稅者의 자율신고 존중, 조사의 回數 및 時限의 制限, 조사착수의 豫告, 搜索 및 領置之 禁止, 調查 公務員의 守則, 調查 摘出 사항에 대한 納稅者의 해명기회 부여 등에 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稅務調查가 적법·공정할 뿐 아니라 納稅者의 權益을 최대한 保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였다.

1) 「稅務調查 運營準則」의 目的과 內容

「稅務調查의 運營準則」의 目的은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모든 稅務調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적법·공정할 뿐 아니라 納稅者의 權益을 最大한 保障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있다.

가) 稅務調查의 基本原則

- ① 信義誠實의 原則
- ② 實質課稅의 原則 :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과 사실상의 귀속자를 규명하여 과세
- ③ 根據課稅의 原則 :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거
- ④ 調查比例의 原則 :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
- ⑤ 納稅水準別 區分管理의 原則 : 신고의 성실도와 세력 및 사업규모별로 구분하여 실시

나) 秘密遵守의 義務

조사공무원이 稅務調查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않거나, 공표할 경우 정부와 당해 납세자에게 不利益이 될 사항에

대하여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를 漏泄해서는 안된다.

다) 調查對象 選定基準 등의 公開

각 세목별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은 公開해야 한다. 단, 공개함으로써 稅務調查의 實效를 거둘 수 없거나 公平課稅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미리 國稅廳長의 승인을 얻은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 調查事務의 管轄

稅務調查 事務는 당해 稅目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稅務署長이 수행한다. 단,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무조사는 國稅廳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 납세자의 업종 및 사업규모, 조사의 난이도, 과급효과,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조사착수 시기의 완급 등을 고려하여 調查事務의 管轄을 조정할 수 있다.

마) 稅務調查의 公租體制

주소지와 사업장의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특별조사, 추적조사 등 廣域調查가 필요한 때에는 조사관할 관서장이 조사착수 전 또는 조사 진행중에 공조받을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당해 官署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통보받은 관서장은 당해 조사진행상 필요한 기간 내에 調查結果를 회보해야 한다.

2) 調查管理對象 選定

가) 選定原則

調查管理對象者는 업종, 사업규모 및 납세의 성실도를 기준으로 직접 조사대상자와 기중관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明白하고 客觀的인 선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稅務調查의 公正성 및 타당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존중하여 조사관리대상자는 誠實納稅를 보장하고 公平課稅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계속조사를 제한하여 동일 세목에 대해 같은 납세자를 매년 一般調查對象者로 선정할 수 없다.

나) 選定基準

일반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당해 納稅者의 稅源綜合管理 狀況과 申告內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준칙이 정하는 원칙의 범위 안에서 각 세목별 조사지침에 따로 정하고 있다. 일반조사 대상자는 사업규모, 납세성실도, 업종의 특성, 과거 납세실적 등을 검토하여 全部調查對象者와 部分調查對象者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한편 特別調查對象者는 다음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서 脫稅情報資料 또는 間接調查에 의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명백하게 포착된 자를 선정한다.

- ① 不動產投機, 전문적 사채놀이, 변칙적 相續·贈與 행위를 하는 자
- ② 企業財産을 부당하게 流出하여 기업을 부실화시키거나 개인재산 증식에 사용하는 자
- ③ 買占賣惜, 暴利, 流通秩序 攪亂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 ④ 所得申告 狀況 등에 비추어 지나친 消費生活을 하거나 과도한 財産을 保有하고 있는 자
- ⑤ 國際去來를 통하여 稅金을 脫漏하거나 기업자금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자
- ⑥ 기타 社會·經濟秩序에 반하는 행위로 稅金을 脫漏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자

追跡調查對象者는 無資料·變則去來가 성행하는 품목 또는 이중가격 형성, 매점매석 등 經濟秩序를 攪亂케 하는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사업자 중 위장가공거래 혐의자, 자료상 혐의자, 기타 탈세정보자료 등에 의한 위장가공거래 혐의자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한다.

基準調查對象者는 가장 신고내용이 誠實하고 당해 업종의 普遍的 基準値를 선정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자 중에서 地域別·規模別로 고르게 선정한다.

기중관리대상자는 다음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납세자로서 直接調查對

象者가 아닌 자를 선정한다. 세목별 申告水準과 官署別 行政力을 감안, 적정인원을 선정하여 實效性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① 業種別 申告誠實度 분석결과 일정수준 이하인 자
- ② 申告內容의 書面分析結果 問題點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
- ③ 조사대상자 선정시 除外基準에 해당되어 直接調査가 면제되었으나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어 繼續管理가 필요한 자
- ④ 脫稅情報資料가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약을 위해 長期 檢討가 필요한 자
- ⑤ 기타 각 稅目別 特殊性을 고려하여 신고지도나 조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稅務調査 實施

가) 一般原則

같은 納稅者에 대한 일반조사는 원칙적으로 統合 實施함으로써 納稅地나 稅目을 달리하여 연 2회 이상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稅務公務員은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稅務調査는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또한 조사시간의 제한을 두어 納稅者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는 야간업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납세자의 日課時間 內에 실시해야 한다.

일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착수 3일 전까지 이를 예고하여야 하며, 一般調査對象者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調査着手을 延期해야 한다.

- ① 天災地變, 火災, 勞使紛糾 등으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 ② 납세자의 疾病, 長期出張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③ 기타 중복조사 배제 등을 위하여 調査着手의 延期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나) 重複調査 防止를 위한 細部施行 節次

세무서 조사대상 기업에 대한 일반조사의 경우 所得稅 또는 法人稅 調査時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다른 稅目的 調査를 統合하여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한 세목에 대한 일반조사 또는 특별조사가 선행된 때에는 다른 세목의 일반조사는 그 착수시기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後順位로 조정하여야 하며 조사선행 세목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脫漏嫌疑가 없는 한 당초 조사를 존중해야 한다.

지방청 조사대상 기업에 대한 附加價値稅 調査에 있어 세무서장은 당해 기업에 대해 一般調査를 실시할 경우 조사착수 예정일 7일 전까지 관할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징세조사국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은 당해 기업에 대한 自體 調査計劃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地方廳 調査對象 企業 : 세무서 조사를 유보하고 지방청에서 統合調査를 실시

② 地方廳 調査對象으로 選定되지 않은 企業 : 세무서에서 조사

다) 調査期間 및 範圍

調査區分別 調査期間은 다음의 <表 II-1>에 정리되어 있듯이 조사의 최대기간을 60일로 限定하고 있다.

稅務調査 期間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延長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도 다음에 제기한 범위 안에서 연장해야 하고 이 기간을 초과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調査管轄 직상급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調査範圍가 擴大된 때 : 확대된 범위를 고려하여 조사구분별 조사기간의 범위 안에서 조사관할 관서장이 다시 정한다.

② 부분조사에서 전부조사로 調査類型이 轉換된 때 : 부분조사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하여 조사구분별 조사기간의 범위 안에서 조사관할 관서장이 다시 정한다.

③ 기타 調査目的 遂行上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 필요한 범위 안

〈表 II - 1〉 調查區分別 調查期間

(單位: 日)

조 사 유 형	조 사 관 할	조 사 기 간
○ 일반조사		
소득세 조사	지 방 청 세 무 서	20 10
법인세 조사	지 방 청	40
부가가치세 조사	세 무 서 지 방 청 세 무 서	20 15 10
○ 추적조사	지 방 청 세 무 서	30 20
○ 특별조사	국 세 청 지 방 청 세 무 서	60 60 30

資料: 國稅廳, 『稅務調查 運營準則』, 1989.

에서 조사관할 관서장이 정한다.

調查期間(연장기간 포함)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납세자에 대한 直接 調查가 종료된 것으로 보며 조사기간을 延長한 때에는 조사관할 관서장이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해당 납세자에게 書面으로 通知해야 한다.

조사진행중 명백한 稅金脫漏 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때에는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調查對象 課稅期間을 확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사범위는 세금탈루 사실이 명백한 항목에 한하며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文書로 통지해야 한다.

라) 調查方法

거래처 및 금융거래 확인조사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去來處 確認 調查의 경우 조사사유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調查管轄 官署長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조사원증에 이를 명기하여 조사대상 거래처에 제시해야 한다.

金融去來 確認調査의 경우에는 조사사유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관 지방국세청장의 承認을 받아야만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搜索 및 領置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어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租稅犯處罰節次法에 의하지 않고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물건을 압수할 수 없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證據湮滅의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해 납세자에게 관련 장부 및 물건 등의 任意提出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 ① 현행중인 犯則行爲를 발견한 때
- ② 비밀장부 등 犯則證據를 발견한 때
- ③ 객관적으로 명백한 稅金脫漏 혐의가 있어 特別調査를 실시하는 경우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

또한 質問調査權의 행사에도 제한을 두어 해당 납세자 및 그 관련인에 대한 질문조사권의 행사는 관련 조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하며 조사와 관련이 없는 納稅者의 私生活 등에 관한 질문은 일체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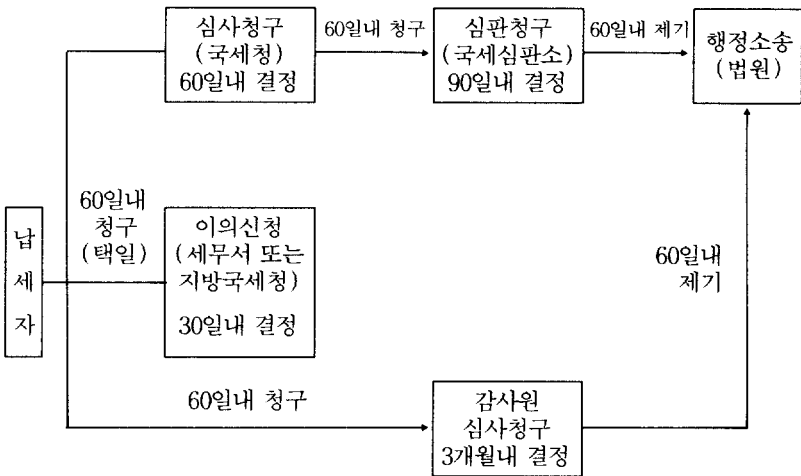
4) 問題點

「稅務調査 運營準則」이 준수된다면 稅務調査와 관련하여서 納稅者의 권익은 상당수준 保護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稅務調査 運營準則」이 일선 稅務署에서 어느 정도 엄격히 遵守되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疑問이 제기된다. 이는 稅務調査에 대한 一般 納稅者들의 의식이 상당히 否定的이라는 사실로부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稅務調査 運營準則」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恣意的이어서 재량권 개입의 소지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稅務調査 運營準則」이 國稅廳 내부규정으로 制定되어 외적으로 法的 拘束力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해당 稅務公務員을 國稅廳 외부에서 징벌할 裝置가 없다는 것이다.

2. 納稅者 權利救濟의 現況

우리나라의 納稅者 권리구제 절차는 다음의 [圖 II - 1]에 잘 나타나 있다.

[圖 II - 1] 納稅者의 權利救濟節次 흐름도



다음의 <表 II - 2>와 <表 II -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納稅者의 不服請求 및 稅務訴訟 事例가 增大하고 있다. 不服請求 및 稅務訴訟 件數가 증대하는 것은 納稅者 基本權의 保障을 위한 法意識이 成熟하였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租稅法律主義가 憲法上의 原理로서 규정된 지 수십년이 지난 現在까지도 완전한 租稅法律主義의 理念을 具現하지 못하고 未治한 狀態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여러 側面에서 파악될 수 있으나 課稅權者, 納稅者 모두에게 있어서 權利와 義務의 相互關係에 대한 認識 不足이 있다고 볼 수 있다.

<表 II - 2>의 國稅關聯 異議申請 및 審査請求 處理實績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納稅者의 不服請求가 課稅官廳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우는 전체 처리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반면, 司法府가 문제해결을 담당하는 <表 II-3>의 行政訴訟의 경우 納稅者의 승소율은 약 40%로 과세당국의 경정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에서 기인된 것이겠지만 과세당국이 사법부에 비해 納稅者 權利保護에 상당히 消極的임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表 II-2> 國稅關聯 異議申請 및 審査請求 處理實績

(單位: 건, %)

	지 방 청					본 청				
	이의신청 처리건수					심사청구 처리건수				
	각하	기각	경정	합계	경정률	각하	기각	경정	합계	경정률
1989	596	1,076	182	1,854	9.8	291	2,832	339	3,462	9.8
1990	692	1,246	194	2,132	9.1	285	3,203	292	3,780	7.7
1991	735	1,411	201	2,347	8.6	352	3,355	273	3,980	6.9
1992	741	1,712	199	2,652	7.5	410	5,056	442	5,908	7.5
1993	1,352	2,073	296	3,721	8.0	562	4,312	442	5,316	8.3
1994	340	2,633	396	3,369	11.8	485	7,012	1,030	8,527	12.1

資料: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1995.

<表 II-3> 稅目別 行政訴訟事件

(單位: 건, %)

	당 년 도 종 결 건 수			
	국 가 승 소	국 가 패 소	합 계	국 가 패 소율
1989	514	484	998	48.5
1990	490	312	802	38.9
1991	563	338	901	37.5
1992	872	550	1,422	38.7
1993	1,085	642	1,727	37.2
1994	896	638	1,534	41.6

資料: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1995.

3. 問題點

우리나라의 경우 朝鮮時代의 稅制 및 日本植民地下에서의 稅制는 課稅權者의 收奪手段으로서의 의미를 가져 조세의 본질을 支配層 내지 權力層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政府 樹立 後 制憲憲法 第90條에 租稅法律主義를 規定하였음에도 不拘하고 1950년 6·25動亂期의 稅制는 戰時 財政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한 戰時 稅制로 전환되었으며, 戰後 再建 및 復興期에 있어서도 戰後 復舊 및 經濟成長을 위한 諸般政策이 강구되는 가운데 稅制改革을 통한 稅收確保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1960年代 초반의 經濟開發期 稅制나 1960年代 후반의 經濟成長期 稅制에 있어서도 開發途上國으로서 급속한 經濟發展을 이루기 위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發展政策을 遂行하는 데 급급하여 國民의 自由權, 財產權의 保護보다 政策遂行의 능률이 우선되었으며, 1970年代 稅制도 經濟開發 支援稅制의 特性을 띠고 經濟目的 達成을 위한 收入豫算의 확보와 관련하여 稅收 增大에 焦點이 맞추어졌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도 社會·經濟 發展政策 遂行에 필요한 財源을 調達해야 하는 責任을 지고 稅收目標 達成만을 추구하고 있는 까닭에 國民의 財產權 保護를 위한 諸般政策이나 裝置의 마련은 未洽한 상태이다. 또한 納稅義務者의 行爲가 불성실하다는 前提下에서 調查爲主의 稅務行政을 떠나가는 한편 特定産業이나 業種에 대하여는 지나친 稅務支援을 하다 보니 不公平의 정도가 심화되어 稅政을 運營하는 과정에서 租稅摩擦과 租稅抵抗을 誘發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租稅賦課·徵收의 適法한 節次가 輕視되고 能率爲主, 國庫爲主, 行政便宜의 稅務行政이 팽배함에 따라 租稅法律主義는 空虛化되고 현실적으로 法の 한계를 超越한 租稅行政이 이루어지고 있다¹⁾.

1) 崔 洸·李愚澤, 「附加價值稅의 政策方向」, 韓國租稅研究所, 1988, pp. 211~213.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기되고 있는 納稅者 權利保護 관련 問題點들을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納稅者의 權利를 積極的으로 保護하는 具體的인 제도(예, 納稅者權利憲章)가 없다.
- ② 우리나라의 租稅制度는 조세를 거두는 국가입장에서 經濟·社會 發展에 필요한 財源調達과 政策實現 手段으로 활용하는 데 치중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納稅者의 基本權이 侵害되어 왔다.
- ③ 租稅行政에 관한 節次法 및 節次規定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納稅者의 義務를 強調·確認하는 입장에 불과하다.
- ④ 납세자가 課稅當局의 결정에 대하여 不服請求(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였을 때 認定되는 경우는 극히 저조한(경정되는 경우는 약 10%) 실정이다.
- ⑤ 國稅廳의 각 세무서 민원실에서 실시하는 「納稅者 苦衷相談」은 극히 制限的이고 實務的인 몇 가지 사항만을 다루고 있으며, 國稅廳이 발표한 「稅務公務員 倫理綱領」은 세무공무원의 紀綱確立 및 非理剔抉用이지 納稅者의 基本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 ⑥ 課稅官廳은 일반적으로 納稅義務者의 행위가 불성실하다는 前提下에서 조사 위주로 稅務行政을 운영하고 있다.
- ⑦ 國稅廳에서 시행하고 있는 「納稅者 苦衷相談」, 「稅務公務員 倫理綱領」, 「稅務調査 運營準則」은 상당히 恣意的이어서 재량권 개입의 소지가 많고 특히 내부규정으로 運營되므로 法的 拘束力이 없다.

이상과 같이 제기되는 問題點의 주요 發生原因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① 課稅權者의 非合理性 및 納稅義務者의 脫法性
 - ② 租稅法律關係가 權利·義務關係라는 認識의 缺如
- 우리나라의 경우 租稅法律主義의 實質的인 內容으로서 憲法上에 「人

間的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平等의 保障」, 「抵抗權」, 「國民主權主義와 自己賦課制度」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들은 다분히 프로그램적 내지 抽象的인 權利들이다. 이러한 헌법규정의 實現을 위해서 國稅廳 내부에서는 몇 가지 規定을 制定하여 納稅者의 權利保護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法的 拘束力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民主租稅에 걸맞게 納稅者의 基本權을 積極的으로 保障하기 위해서 「納稅者權利保障法」이나 「納稅者權利憲章」(準憲法的 機能을 가진 憲章)을 시급히 제정하고 이 憲章의 趣旨에 適當한 節次法들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Ⅲ. 主要國 納稅者權利憲章의 概要

최근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納稅者權利憲章(Taxpayer's Bill of Rights, Your Rights as a Taxpayer 등)을 제정하여 국민은 국가가 부과한 정당한(just) 세금을 납부할 義務가 있는 동시에 國家로부터 稅務에 관한 여러 가지 助力(assist)을 받을 權利, 情報提供을 받을 權利 및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確認하고 이를 保障해 주는 공통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納稅者權利의 保障은 納稅義務를 相殺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本章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納稅者權利憲章의 概要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納稅者權利憲章을 制定할 때 包含시켜야 할 內容 및 制定形式의 基本方向을 樹立하는 데 참고하고자 한다.

1. 美國의 「納稅者權利憲章」

가. 美國 內國歲入廳의 「納稅者로서의 귀하의 權利」

1988년 8월 美國聯邦 課稅廳인 內國歲入廳(IRS)은 일반인을 위한 선언서 「納稅者로서의 귀하의 權利」(Your Rights as a Taxpayer)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納稅者로서의 귀하의 權利」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 ① 納稅者는 稅法을 遵守하기 위해서 정보의 제공을 받는 것과 동시에 相談할 權利가 있다.

- ② 納稅者는 자신의 個人情報 및 金融情報를 秘密로 보호받을 權利가 있다.
- ③ 納稅者는 언제나 美國 國稅廳(IRS)의 직원으로부터 친절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④ 美國 國稅廳(IRS)의 직원은 언제나 納稅者의 權利에 대해서 설명하고 納稅者의 權利를 保護하게 되어 있다.
- ⑤ 納稅者가 어떠한 이유로 美國 國稅廳(IRS)에 관하여 불평이 있는 경우 納稅者는 地域稅務署長 내지는 서비스센터장에게 不平申請을 할 權利가 있다.
- ⑥ 納稅者는 법률에 따라 지불해야만 하는 세금을 最少로 納付하는 것과 같이 스스로 사업상 및 個人의 財務에 관한 계획을 세울 권리가 있으며, 適正額의 稅金에 한하여 지불할 의무가 있다.
- ⑦ 美國 國稅廳(IRS)은 대부분 納稅者의 納稅申告書를 申告한 그대로 認定한다.
- ⑧ 納稅者가 조사관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異議提起를 할 權利가 있고 그 權利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게 되어 있다.
- ⑨ 納稅者에게 納稅義務가 있을 때는 언제나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송부하고 거기에는 納稅者가 지불해야 하는 세액과 延滯利子 및 加算稅額이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 ⑩ 세금의 滯納處分節次를 어느 단계에서 停止시키는 데 있어서 納稅者는 세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만약 세금을 전액 지불할 수 없을 때는 가능한 納付方法을 협의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美國 國稅廳(IRS)에 연락하여야 한다.
- ⑪ 세금을 전액 지불한 경우에서도 稅額에 謬誤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는 還給請求를 할 권리가 있다.
- ⑫ 納稅者가 加算稅의 원인이 된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 일정한 加算稅를 取消(減額)받을 권리가 있다.

2. 英國의 「納稅者憲章」

英國은 1986년 7월에 「納稅者憲章」(Taxpayer's Charter)을 공포하였으며 1991년 8월에는 1986년 憲章(舊憲章)을 發展·繼承하는 형태로 「新納稅者憲章」(New Taxpayer's Charter)을 공포하였다.

가. 「新納稅者憲章」(New Taxpayer's Charter)의 主要內容

1) 課稅廳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納稅者의 權利

① 公平

- 稅金問題를 公正하게 처리한다.
- 納稅者는 義務가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支拂을 요구받는다.
- 어떠한 納稅者도 公平하게 취급받는다.

② 援助

- 稅務公務員은 納稅者가 자신의 權利와 義務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課稅廳의 相談所에서는 納稅者에게 情報와 援助를 提供한다.
- 課稅廳의 職員은 항상 예의바르고 鄭重한 姿勢로 納稅者를 대한다.

③ 效率적인 서비스

- 納稅者는 稅金問題를 迅速하게, 그리고 正確하게 處理받는다.
- 納稅者 個人의 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秘密을 保護받는다(프라 이버시 보호).
- 法律執行에 協力하기 위한 納稅者의 費用이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한다(효율적인 비용운영).

④ 課稅廳 業務의 責任所在를 明示한다.

2) 納稅者가 納得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救濟方針

- 課稅廳에서는 納稅者가 어떻게 異議申請을 하면 좋은가를 올바르게 알려준다.
- 納稅者는 자기의 세무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納稅者는 獨立의인 審判所에서 審査받을 수 있다.
- 納稅者는 國會議員을 통해 ombudsman에 대해서 불평을 提起할 수 있다.

3) 納稅者에 대한 課稅廳의 付託事項

- 誠實하게 納稅義務를 履行한다.
- 課稅廳에 精確한 情報를 提供해야 한다.
- 納稅者는 세금을 기한까지 납부할 義務가 있다.

나. 課稅廳의 「納稅者 서비스 方針」의 制定

「新納稅者憲章」은 內國歲入廳(The Inland Revenue Service) 및 關稅消費稅廳(Customs and Excise Service)의 「對納稅者 서비스 方針」(Customer Service Initiatives)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課稅廳의 「對納稅者 서비스 方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① 課稅廳의 서식을 가장 보편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알기 쉽게 다시 만든다.
- ② 中小企業, 社會保障受給者 등 특정한 그룹의 納稅者가 課稅廳에서 어떠한 援助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를 알리기 위한 일련의 팜플렛을 작성한다.
- ③ 「稅金相談센터」(Tax Enquiry Centers)의 業務時間을 고객(納稅者, 市民)의 수요에 응할 수 있도록 伸縮的으로 調整한다.
- ④ 課稅廳의 서비스를 받을 시민의 소리를 경청한다.

- ⑤ 서비스에 不滿을 느낀 고객이 어떻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한 팜플렛을 작성한다.
- ⑥ 고객서비스를 전담하는 「對納稅者 서비스 擔當官」(Customer Service Managers)을 임명한다.
- ⑦ 納稅者로부터의 便紙에 응답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공표하며, 이 기준에는 응답시간의 設定도 포함되도록 한다.
- ⑧ 一般大衆과 直接的인 接觸을 갖는 職員에게는 명찰을 부착한 복장을 義務化하고 電話 및 便紙에 의한 대응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기의 이름을 알려줄 것을 義務化한다(다만 신변의 安全 등에 특별한 불안이 있는 경우는 제외).
- ⑨ 納稅者 서비스의 品質管理(QC)를 추진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對策을 취한다.

3. 캐나다의 「納稅者權利宣言」

캐나다는 1985년 2월 28일에 연방 재무부 장관이 「納稅者權利宣言」(Declaration of Taxpayer Rights)을 제정·공포하였다. 캐나다의 「納稅者權利宣言」은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納稅者權利宣言」의 前文內容

캐나다의 憲法 및 法律에서는 稅金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納稅者를 保護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權利를 納稅者에게 부여하고 있다.

- ① 納稅者는 어떠한 權利가 주어지고 있는가를 알 權利가 있다.
- ② 納稅者는 부여된 權利를 주장할 權利가 있다.
- ③ 納稅者는 審査를 받을 權利가 있다.
- ④ 동시에 納稅者는 公平하게 賦稅받을 權利가 있다(不平申請에 대

해서 공정한 취급을 받을 權利).

- ⑤ 納稅者가 스스로의 權利를 행사할 때 이에 協力하는 것은 國稅廳 산하 稅務公務員의 중요한 직무이다.
- ⑥ 苦衷申請에 대하여 공정하게 취급을 받는 것은 納稅者의 가장 중요한 權利 중의 하나이다.

國稅廳 管轄 稅務署 職員의 중요한 業務 중 하나는 納稅者가 스스로의 權利를 요구할 때 이것에 협력하는 일이다.

나. 「納稅者權利宣言」의 本文內容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納稅者權利宣言」의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① 情報提供
- ② 公平
 - 納稅者는 稅額을 法律 및 事實에 따라서 公平하게 결정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稅入省 職員은 적정액만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鄭重하고도 配慮있는 대응
- ④ 誠實性的의 推定
- ⑤ 프라이버시와 秘密의 保護
- ⑥ 獨立的인 審査
 - 査定通知 내지는 再査定通知에 대해서 不服申請을 할 權利가 있다.
- ⑦ 未納付 상태에서의 公平한 審判
- ⑧ 2개 국어 병용 서비스

4. 프랑스의 「納稅者憲章：調査받을 때 귀하의 權利와 義務」

가. 1974년 舊憲章의 前文內容

프랑스가 택한 自主申告主義下에서 세무조사는 법적 요청 및 과세공평의 시각에서 실시되며, 納稅者는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誠實한 것으로 추정받는다. 그리고 納稅者憲章을 제정·공포하는 취지는 세무조사에 관한 원칙을 요약하여 納稅者의 權利와 義務를 명백하게 함으로써 納稅者와 課稅廳과의 相互理解를 깊게 하고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있다.

稅務調査의 범위와 관련하여 納稅者憲章에서는 稅務調査權을 행사할 수 있는 稅務公務員의 범위를 規定함과 동시에 당해 稅務公務員의 신분 증명서 휴대를 義務로 하고 있다. 原則적으로 이전 4年間の 신고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調査는 會計帳簿 調査, 개인의 綜合的 財務狀況 調査 중 어느 하나 또는 쌍방에 의한다.

會計帳簿 調査의 目的은 企業의 財務狀態를 파악하는 것 외에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의 納稅義務의 범위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조사관의 任務는 부적절한 財務處理法에 대한 指導는 물론 감액수정절차의 고지도 포함하고 있다. 회계장부의 조사는 실지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지조사에 관하여 納稅者憲章에서는 사전통지, 보좌인의 입회, 장부를 영치할 때 예치증의 교부 등을 포함하는 조사관의 책무의 범위, 조사거부에 대한 벌칙, 경정절차 및 쟁송절차 등에 대한 方針을 명백히 하고 있다.

規定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補佐人の 立會權이 保障되므로 어떠한 納稅者도 조사를 할 때에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보좌인을 입회시킬 수 있으며 조사관은 이 입회권을 納稅者에게 고지할 義務가 있다. 또한, 調査回數에 制限을 두어 同一稅目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의 조사가 완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 조사는 3개

월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期間으로 制限하고 있다. 그리고 納稅者는 세법의 公정한 해석의 범위 안에서 納稅義務를 진다.

租稅節次法典(1982년) 제10조 제4항에 있어서 稅務行政은 稅務調査에 앞서 納稅者憲章을 피조사자인 納稅者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義務化하고 있다.

나. 「納稅者憲章: 調査받을 때 귀하의 權利와 義務」(프랑스 經濟·豫算 財政省: 1990년)

1990년에 制定된 「納稅者憲章: 調査받을 때 귀하의 權利와 義務」의 전문에서는 納稅者가 정부(稅務行政廳)에 대해 公정한 세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稅務行政廳은 納稅者의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納稅申告制度의 기능을 관리하는 권한의 正當性을 확보하고 있으며, 納稅者는 稅務行政廳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納稅者憲章」은 稅制가 納稅者 및 稅務行政廳의 義務와 權利 사이에서 균형을 확보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뉴질랜드의 「納稅者 權利와 義務」

뉴질랜드 內國歲入廳(Inland Revenue)은 주로 所得稅와 물품 및 서비스세(Goods and Service Tax)의 집행에 종사하며 稅務行政에 대한 國民, 納稅者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그 역할과 서비스 방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다양한 선언서를 공표하였는데 가장 두드러진 예가 바로 1986년에 공표한 「내국세입청의 목적, 원칙 및 실행에 관한 선언」(Statement of Purpose, Principles and Practice, 이하 PPP선언)이다.

1990년에는 內國歲入廳의 苦衷處理 서비스部(Problem Resolution

Service)에서 一般納稅者를 위한 「稅金에 대해서 不平은 없습니까?」(Tax Problems?)라는 선언서를 준비하여 納稅者 權利의 尊重을 제일로 하는 稅務行政의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1994년에는 「納稅者權利憲章: 귀하의 權利와 義務」(Your Rights and Obligations)를 제정함으로써 納稅者 權利保護에 힘쓰고 있다.

가. 內國歲入廳의 「目的, 原則 및 實行에 관한 宣言」(PPP선언 全譯)

1) 目的

內國歲入廳은 法律 또는 가장 效率的이고도 効果적인 방법으로 다음의 目的을 달성한다. 첫째, 뉴질랜드 政府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歲入을 조달하고 둘째, 家族扶養 稅額控除에 의해 家族을 지원하고 셋째, 부양을 하고 있지 않은 친권자로부터의 子女教育費 징수에 의해 子女를 援助한다.

2) 原則

納稅義務, 家族扶養稅額控除 請求權 및 子女教育費 支拂義務는 國會가 제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정해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따라서 많지도 적지도 않는 적정한 금액의 지불이 요구된다. 이 原則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두 자발적으로 법률에 따르는 것이다.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기 위해 內國歲入廳은 納稅者가 자신의 權利와 義務에 대해 아는 바에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法律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언제나 公平하고 鄭重하며 迅速한 方式으로 법률을 집행하며, 法律을 지키지 않는 자를 적발하여 그 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을 한다.

3) 義務

내국세입청은 다음과 같은 義務가 있다.

- ① 納稅者의 必要(needs)를 確認하고 동시에 거기에 副應한다.
- ② 모든 서비스의 質, 자세, 效率性 및 效能性의 向上에 언제나 노력한다.
- ③ 새로운 財政政策의 확립 및 그러한 정책에 納稅者가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法律의 制定에 있어서 政府에 권고를 하고 동시에 政府를 援조한다.
- ④ 法律違反의 발견방법을 향상시킨다.
- ⑤ 財務行政의 透明化에 의해 일반의 信賴를 유지한다.
- ⑥ 마우리족(원주민)의 요구를 인식하고 그것에 응할 수 있도록 援助한다.

나. 內國歲入廳 苦衷處理 서비스부의 宣言書 : 「Tax Problems?」

1) 序論

稅金에 관한 不平이 있는 경우 歲入廳에서는 納稅者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內國歲入廳의 目標은 納稅者가 稅法을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稅務職員은 모든 對面에 의한 問議, 電話 내지 文書에 의한 照會에 대해 정중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다. 문제의 대부분은 納稅者의 지역에 있는 內國歲入廳 사무실과의 접촉에 의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納稅者가 遲延, 不充分한 회담 내지 不公平한 처분 등에 대해서 異議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도 때때로 歲入廳 職員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문제의 해결을 피할 수 있다. 불평이 있을 때에는 먼저 納稅者의 기록을 취급하고 있는 자와 직접 접촉해야 한다.

內國歲入廳에서는 歲入廳 사무실에 찾아 오는 어떤 納稅者와도 공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內國歲入廳은 苦衷處理 서비스(Problem Resolution Service)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각 稅務署에는 納稅者가 신청한 불평에 대처하기 위해서 경험이 풍부한 간부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苦衷處理官으로 하여금 納稅者의 입장에서 서서 빠르게 그 문제에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內國歲入廳에서는 5(업무)일 이내에 解決策을 찾아내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2) 節次

苦衷處理 서비스부는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 內國歲入廳의 節次에 대한 再檢討를 실시할 수 있다. 苦衷處理 서비스부는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선을 권고하고 새로운 節次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인지를 확인한다.

苦衷處理 서비스는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 가장 가까운 內國歲入廳 사무실로 가든지 전화를 걸어서 苦衷處理官과 직접 통화를 하면 된다. 또는 稅務署長 앞으로 편지를 쓸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봉투에 「苦衷處理官 앞」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納稅者가 內國歲入廳 사무실로 苦衷申請 전화를 걸든가 사무실로 苦衷申請을 하러 가는 경우 본인의 納稅通知書, 査定通知書, 關係文書(便紙에 의한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편지에는 불평에 관해서 명확하고 상세하게 쓰고 가능하다면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복사본 등도 동봉하고 전화번호 등도 기입)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納稅者의 고충신청이 苦衷處理 서비스부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인 경우 納稅者에게 접촉해서 누가 그 納稅者의 문제해결을 맡고 있는가 또한 그 문제가 어느 정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를 알려준다. 또한 納稅者에게 추가하여 정보의 제공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內國歲入廳에서

는 문제를 5(업무)日 이내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사가 종료된 경우 苦衷을 申請한 納稅者와 접촉해서 그 결과를 알려준다. 納稅者의 문제는 소관세무서의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부문으로 보내지며 納稅者는 전화 또는 편지로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이유로 누가 그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納稅者의 고충이 內國 歲入廳의 本廳(Head Office) 내지 지방세입국(Regional Office)에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苦衷處理 서비스부의 본부에 직접 접촉한다.

다. 「納稅者 權利와 義務」(Your Rights and Obligations)

뉴질랜드 內國歲入廳(Inland Revenue)은 1994년 평이하고 간결한 文體로 기술된 「納稅者의 權利와 義務」를 制定·公表하였다. 이는 이미 각종 節次法 및 規定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內國歲入廳長이 안내서의 형식으로 發表한 것이다. 여기에 포함된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 ① 良質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權利
- ② 秘密保障을 받을 수 있는 權利
- ③ 信賴를 받을 수 있는 權利
- ④ 擔當 稅務公務員에 대한 정보획득의 權利
- 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權利
- ⑥ 異議를 제기할 수 있는 權利
- ⑦ 稅務調査를 받을 때의 權利
- ⑧ 정직하게 稅務申告를 할 義務

6. 日本의 納稅者權利憲章 制定에 관한 動向

가. 納稅者權利憲章의 制定에 관한 움직임

日本에는 다양한 租稅節次에 관한 法律이 있다. 國稅通則法, 國稅徵收法, 國稅犯則團束法 등이 그 전형이다. 또한 所得稅法, 法人稅法, 消費稅法 등 個別稅法 안에도 節次에 관한 다양한 規定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節次法, 節次規定은 일반적으로 「納稅者의 義務」를 강조·확인하는 관점이 강하다.

日本에서는 민간단체 그리고 一部 政黨을 중심으로 納稅者權利憲章을 제도화하려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表 Ⅲ-1>에서 나타나듯이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加速化되어 조만간 納稅者의 權利를 보호하기 위한 具體的 장치가 制度化될 것으로 豫想된다.

<表 Ⅲ-1> 日本의 納稅者權利憲章 制定에 관한 움직임 事例

	事	例
1986. 2	社團法人 自由人權協會	「納稅者의 權利宣言」
1990. 9	東京地方稅理士會制度部	「稅務調査에 관한 憲章(案)」
1990. 11	日稅連稅制審議會	「稅務行政手續의 존재형태에 관하여(第二次 答申)」
1992. 2	日本 共產黨	「納稅者憲章(草案)」
1992. 4	愛知縣 商工團體連絡會 稅務行政研究會	「우리들이 요구하는 稅務調査手續法案 要項(第一次案)」
1992. 6	全國商工團體聯合會	「納稅者의 權利憲章」
1992. 6	不公正한 稅制를 규명하는 會	「납세자의 權利憲章(案)」

나. 全國商工團體聯合會의 「納稅者의 權利憲章」

1) 全國商工團體聯合會 「納稅者의 權利憲章」의 主要내용

全國商工團體聯合會가 1992년 6월 2일에 발표한 「納稅者의 權利憲章」은 基本原則과 本文 13條로 構成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國民의 基本的人權은 保障되며, 성실한 納稅者로서 존중된다.
- ② 모든 納稅者에게 申告納稅制度의 原則이 保障된다.
- ③ 國民의 프라이버시는 국가 또는 地方自治團體 등의 간섭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되며, 納稅者가 요구하는 경우 納稅者 본인에 대한 情報은 本人에게 전면적으로 공개한다.
- ④ 納稅者가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질문검사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항상 정중하고 배려있는 취급을 받는다. 세무공무원은 納稅者에게 질문검사를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納稅者의 형편을 존중하고 반드시 구두 또는 문서로써 事前에 通知할 義務가 있으며 事前 通知없이 행한 조사는 그것만으로도 무효이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시 合理性이 있는 조사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⑤ 稅務調査 등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納稅者에게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納稅者의 권리를 告知하여야 한다. 권리의 고지 없이 행한 조사는 그것만으로도 無效이며 세무공무원은 이들 納稅者의 諸權利를 遵守할 義務가 있다.
- ⑥ 稅務調査에 公正을 기하기 위하여 納稅者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자인 입회인의 입회, 조사내용의 기록 및 녹음이 인정된다.
- ⑦ 課稅處分은 어디까지나 實額課稅가 原則이고 推計課稅는 制限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 ⑧ 課稅處分에 있어서는 事前에 그 理由를 충분히 알림과 동시에

聽聞 및 反論의 機會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⑨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같은 권리구제제도는 국세청과 독립한 기관에서 심사되며 권리구제기관의 심사를 거칠 것인가 직접 소송으로써 다룰 것인가는 納稅者의 선택에 맡겨진다.
- ⑩ 生存權的인 재산의 押留 및 徵收는 금지되며 納稅者는 불복심사 및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경우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평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⑪ 納稅者옴부즈맨(세정감찰관·苦情처리담당관)제도를 설치한다.
- ⑫ 納稅者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裁判은 總額主義에 의해서가 아니고 爭點主義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 ⑬ 稅務公務員의 民主的인 諸權利는 보장되며, 課稅·徵收의 기준에 의한 勤務評定은 금지된다.

IV. 租稅節次法の 制定 檢討

1. 租稅行政에 있어서 適正節次의 意義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수행하는 기능이 점차 확대되면서 行政環境이 급변하고 복잡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政府 政策이 법률로 입안된다 하더라도 행정기관 나름대로의 해석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行政裁量 내지 行政의 自意性이 남용될 소지가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租稅行政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계된 것으로 적법한 適正節次(due process)가 다른 어떤 행정보다 매우 중요하다. 경제행위 및 사회생활이 복잡화·고도화됨에 따라 課稅官廳이 전문기술적인 裁量權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나 법원이 이에 대응하는 데에는 능력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미리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適正節次로 규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徵稅行政에 있어 이미 押留와 같은 행정행위가 발동되면 사후적인 구제제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인 구제가 불가능하거나 구제를 받는 데까지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納稅者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行政處分의 발동과정에 신중한 접근이 강구되어야 한다.

憲法 第12條의 適法節次條項은 第38條 납세의무와 第59條 조세법률주의가 함께 반영되어 조세의 납부와 徵收過程에 있어 納稅者와 課稅官廳간의 권리·의무관계가 일방적이 아니라 형평을 이루는 관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중심으로 한 「國民의 權益保護를 위한 行政節次에 관한 訓令」(총리령 제235호)이 있으며, 行政節次制度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適法節次原理를 행정법 분야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行政節次法」이 1987년

에 입법예고되었다가 처분의 지연,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국가적 주요사업의 추진곤란, 공무원의 행정절차에 대한 인식과 경험부족으로 인한 혼란예상 등의 이유로 국회제출이 보류된 바 있으며 1995년에 다시 國會에 제출,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2. 主要國의 納稅者 權利保障을 위한 租稅節次法

가. 美國의 「納稅者權利保障法」

미국의 경우 1946년에 聯邦行政節次法이 제정되었으며 나아가 稅務調査를 포함한 연방세무행정에 관련된 모든 절차가 內國歲入法(Internal Revenue Code)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稅務調査는 크게 산술적인 誤謬 및 漏落된 수입의 수정 또는 자료의 보완과 같은 간단한 사항에 대해 서비스센터에서 전화나 편지로 조사하는 Correspondence audit, 조사대상의 난이도에 따라 세무서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Office audit, 그리고 전문조사관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Field audit로 구별할 수 있다. 이들 각종 조사에 관해서는 內國歲入法과 재무성의 行政規則(Regulation)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88년에 연방의회는 「包括的 納稅者權利保障法」(Omnibus Taxpayer Bill of Rights Act, 이하 「權利保障法」)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納稅者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절차상의 適正性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美國聯邦의 「納稅者權利保障法」

미국연방의회에서 제정한 「納稅者權利保障法」의骨子は 다음과 같다.

첫째, 納稅者에게 權利를 알려주어야 한다. 稅務調査를 할 때 국세청은 納稅者의 권리 및 국세청의 업무에 대해 기술한 納稅者權利憲章을 교

부하여야 한다.

둘째, 納稅額 및 更正 등의 通知와 理由 附記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納付稅額, 延滯利子, 加算稅, 加算金 등의 算定根據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납세의무자가 조사결과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信義誠實 原則의 適用과 加算稅 등의 경감을 위하여 국세청 지도를 신뢰한 納稅者에 대해서는 그 납세지도가 잘못되었을 경우 그것이 서면으로 확인되는 한 利子·加算稅·重加算稅 등을 경감해 주어야 한다.

넷째, 納稅者가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의한 稅務調査 내용을 錄音할 수 있다.

다섯째, 국세청은 稅務調査에 앞서서 또는 조사시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근거와 納稅者가 갖는 權利를 告知하여야 한다. 이 중 중요한 권리사항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세무사(enrolled agents) 등 專門家와 相談할 權利를 들 수 있다.

여섯째, 稅務調査를 받을 때 稅務專門家가 納稅者로부터 서면에 의한 代理權을 위임받은 경우 納稅者를 대신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소환장에 의한 특별조사를 제외하고는 納稅者 본인의 입회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세무지식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納稅者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에게는 전문가가 응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일곱째, 租稅法院에서 승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異議申請 및 審査請求와 같은 行政不服節次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더불어 국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個別 損害賠償請求 및 補償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덟째, 納稅者의 민원, 특히 사후구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ombudsman局을 설치하고 納稅者救濟命令(Taxpayer Assistance Orders)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 「納稅者權利保障法 II」(Taxpayer Bill of Rights II)

1988년에 制定되었던 「權利保障法」에 대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의회를 중심으로 納稅者 권리구제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되었으며, 이런 노력을 통해 1992년에 發議되어 하원을 통과한 「納稅者權利保障法 II」에서는 기존에 비해 더욱 강화된 納稅者 保護裝置를 마련하였다.

즉, 이 법에 의하면 종래 국세청장이 임명하던 臬부즈맨制度를 擴大·改編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납세자보호관(Taxpay Advocate)을 둠으로써 納稅者 權利保護에 보다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하였다. 납세자보호관의 救濟命命을 통하여 특정 조치에 대한 취소와 새로운 확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종 立證責任을 국세청으로 전환시켜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분할납부규정을 완화하고 過少·過多 納付된 세금의 이자율 차이를 조정하여 쌍방의 이자율을 동등하게 하였다.

세금징수 분야에 있어서도 추징예정통보서(Notice of Proposed Deficiency)를 60일 이전에 납세자에게 발부하도록 하는 한편 押留 등 滯納處分規程의 수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세금납부액이 적어지는 경우에도 부부합산신고로의 전환요건을 완화하였다. 원천징수의무의 위반에 대한 벌과금 및 권리구제절차조항을 완화하여 권리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세무관련 자료보고규정에 있어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稅務行政上 비용보상의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도 課稅官廳으로 전환하였다.

3) 重複調査의 禁止

미국의 內國歲入法 第7605條에 의하면 납세자는 불필요한 조사나 검사를 받지 아니하며, 납세의무자가 재조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조사 후 國稅廳이 납세의무자에게 문서로 추가조사가 필요함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各 課稅年度에 한 번에 한하여 납세의무자의 회계장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本 규정은 重複調査의 금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으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려면 課稅官廳이 명백한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질적인 誤謬 및 詐欺行爲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프랑스의 「租稅節次法」

프랑스 역시 租稅一般 法典 內에 실체적인 규정과 절차적인 규정이 혼재되어 있었으나 1980년에 「租稅節次法」을 독립시켜 제정하였다. 이는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 중 제2편이 稅務調査에 관한 규정으로 제1장은 稅務行政機關의 調査權, 제2장이 質問檢査權, 제3장이 세무상의 秘密保障義務, 제4장이 稅務調査의 期限制限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절차법상의 납세자의 권리는 납세자권리헌장에 구체화되어 있으며 동법 第10條에 의하면 稅務調査에 앞서 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헌장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同法の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稅務調査의 事前通知

稅務行政廳은 회계장부의 조사나 개인의 종합적 재무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조사자인 납세자에게 事前通知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稅務調査는 통지서가 교부된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통지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첫째, 납세자의 代理人 선임 및 입회권에 대한 안내 둘째, 조사 대상 및 기간 셋째, 피조사자의 성명 및 주소 넷째, 조사개시 일자 및 시간 다섯째, 조사관의 성명 등을 들 수 있다.

2) 納稅者憲章의 交付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稅務調査를 할 때에는 사전에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현장을 피조사자인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稅務調査期限의 制限

개인의 종합적인 財務狀況에 대한 조사는 1년 이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조사는 3개월 이내에 終了하는 것이 원칙이다.

4) 稅務調査結果의 通知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申告內容을 인정하는 是認通知書를 교부하거나 경정이유를 부기한 更正通知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5) 重複調査의 禁止

일단 조사가 終了된 경우 同一한 課稅期間 또는 同一한 稅目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중복조사가 금지된다.

다. 獨逸의 「租稅基本法」

독일은 1977년에 「一般行政節次法」을 제정하였으나 稅務行政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은 연방의 「조세기본법」(Abgaben Ordnung)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에서는 稅務調査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비밀보호, 代理人, 세무공무원에 대한 忌避, 조사의 원칙, 證據方法, 現場調査의 限界, 납세의무자의 協力義務, 調査終結, 그리고 조사보고의 내용 및 협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稅務調査時 납세자에 대한 조사명령서를 교부하는 형식을 통해 그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適正節次가 수행되고 있다. 事前通知는 대기업의 경우 4주 전, 中小企業에 대해서는 2주 전에 이루어지는데 조사할 세목,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의 법적 근거, 조사개시 일자, 조사담당자의 성명, 納稅者의 權利와 義務 등이 기재된 서면에 의한다. 調査公務員의 공평에 대한 偏見이 우려되는 경우 기피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사의 연기신청도 가능하다.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조사종결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협의하기 상당기간 전에 稅務調査에서 摘出한 문제점과 調査終結의 협의기일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調査終結 後 작성되는 서면보고서에 대해 납세자가 의견을 陳述할 기회도 부여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租稅節次法 制定方案

우리나라의 경우 憲法 第12條에 의하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行政處分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行政節次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조세에 관련된 行政處分은 국민의 財產權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租稅와 관련된 適正節次法の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租稅節次法이나 納稅者權利基本法과 같은 성격의 법률은 헌법적인 개념을 지닌 매우 중요한 법규로서 이의 제정을 위해서는 長期的인 計劃을 통해 行政節次法과의 관계, 情報公開 및 私生活保護法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각 稅法에 分散 규정되어 있는 節次的인 규정들을 統合하여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작업이 우리의 納稅環境에 비추어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든다면 우선 納稅者 義務 위주의 현행 國稅基本法을 대폭 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國稅廳의 내부통칙으로 되어 있는 課稅適否審査制度와 「稅務調査 運營準則」의 많은 부분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稅務調査의 개념규정이 반드시 삽입되어야 한다. 현재 稅務調査란 용어는 실무상의 용어로 稅法上에서는 조세와 관련된 공무원의 質問·檢査(調査)權의 행사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세분화·유형화해야 한다.

둘째, 납세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의 요구에 의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국제청에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稅務調査時 納稅者權利憲章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납세자가 稅務調査 過程中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할 권리 및 그들을 代理人으로 선임하여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납세자의 신고서 등 과세자료에 포함된 사업상의 기밀이 경쟁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고 課稅目的 外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信賴關係가 형성되어야만 납세자로부터 성실하고 自發的인 納稅協力(voluntary compliance)을 얻어낼 수 있다. 따라서 課稅官廳에 제출된 個人納稅情報 등은 법률에서 인정된 목적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정보의 自己統制權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현행 國稅廳 訓令으로 되어 있는 「稅務調査 運營準則」第20條에 규정되어 있는 重複調査 禁止의 원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課稅官廳은 租稅脫漏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同一 稅目 및 同一 課稅期間에 대해 중복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과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稅務調査 終了時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稅務調査의 개념 및 범위가 명시되어야 한다. 최근에 제정된 「課稅適否審査 事務處理規程」(국세청 훈령 제 1237호)에는 決定前 通知 條項이 삽입되었는데, 이는 稅務調査 終了後 납세고지 전에 납세자에게 조사내용에 대한 검토·설명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사전에 구제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를 國

稅廳 訓令 수준으로 유지하기보다는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에는 이들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명시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좀더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가. 稅務調査의 概念 規定

稅務調査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비롯한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익보장 및 適正節次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체계에서 稅務調査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94년 12월 22일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제8장 補則에 稅務調査의 事前通知가 삽입된 것이 최초이다. 이외에는 <表 IV-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개별세법에 세무공무원의 質問·檢査(調査)權의 行使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稅務調査關聯 規程들이 附加價値稅法上的 更正 및 質問·調査, 所得稅法上的 質問·調査, 法人稅法上的 質問·調査, 相續稅法上的 質問·檢査權 등으로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선진국과 같은 稅目別 統合調査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稅目別로, 특히 所得稅·法人稅와 附加價値稅가 각각 분리되어 조사되는 것이 보통이다¹⁾. 따라서 稅務調査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납세자권리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이 구축되고 세무서의 조직도 현행 세목별 조직에서 납세자별·기능별 조직으로 재편성될 경우 統合調査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1) 영국의 경우, 內國稅廳과 關稅消費稅廳이 분리되어 있어 사실상 부가가치세와 직접세는 분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연방정부의 세원이 직접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적인 일반소비세인 Sales and Use Tax가 州稅인 관계로 역시 直接稅와 一般消費稅間에 稅務調査가 분리·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表 IV - 1〉 現行 稅法上 稅務調查關聯 規程

稅 務 調 査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국세기본법 제85조의 2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2 국세기본법 통칙 제35조 【세무조사의 연기신청】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6 국세기본법 통칙 제36조
質 問 · 檢 査 權	【질문·검사의 신청】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 【질문·검사】법인세법 시행령 제134조 【질문·검사권】국세기본법 제76조 상속세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27조 【질문·조사】법인세법 제68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소득세법 제17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질문·조사 및 명령사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지방세법 제64조
更 正	【경정】부가가치세법 제21조

한편 현행 「稅務調查 運營準則」에 의하면 稅務調查의 유형이 일반조사와 특별조사, 그리고 추적조사와 기준조사로 구분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이들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一般調查

一般調查는 당해 납세자의 稅源綜合管理 상황과 申告內容을 사업규모, 납세성실도, 업종의 특성, 과거 납세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대상의 課稅期間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최소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조사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所得稅와 法人稅 調查의 경우 당해 납세자가 납부하는 稅目 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모든 稅目과 源泉稅를, 그리고 附加價値稅 調查의 경우 당해 납세자가 납부하는 特別消費稅, 酒稅 및 源泉稅를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所得稅 調查의 경우 지방청 조사는

20일, 세무서 조사는 10일, 法人稅 調査의 경우 지방청 조사는 40일, 세무서 조사는 20일, 附加價値稅 調査는 지방청 15일, 세무서 10일로 규정되어 있다.

2) 特別調査

特別調査는 ① 부동산투기, 전문적인 사채놀이,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를 하는 자, ② 기업재산을 부당하게 流出하여 기업을 不實化시키거나 個人財産 增殖에 사용하는 자, ③ 買占賣惜, 暴利, 流通秩序 교란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④ 소득신고상황에 비추어 지나친 消費生活을 하거나 과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⑤ 국제거래를 통하여 세금을 脫漏하거나 기업자금을 해외로 流出시키는 자, ⑥ 기타 社會經濟秩序에 反하는 행위로 세금을 脫漏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자 중 脫稅情報 또는 間接調査에 의하여 세금을 脫漏한 혐의가 명백하게 포착된 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 조사대상 課稅期間은 최근 5개 課稅期間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조사기간도 국세청 조사는 60일, 지방청 조사 역시 60일, 세무서 조사는 30일로 되어 있다.

3) 追跡調査

追跡調査는 無資料·變則去來가 성행하는 품목 또는 이중가격 형성, 매점매석 등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사업자 중 위장가공거래 혐의자, 기타 脫稅情報資料 등에 의한 위장가공거래 혐의자에 해당하는 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 조사대상 課稅期間은 최근 4개 課稅期間의 범위 안에서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사대상 稅目は 부가가치세이며 조사기간은 지방청 조사 30일, 세무서 조사 20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유통과정 추적조사는 특별조사의

특수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4) 基準調査

基準調査는 ‘미국에서 調査對象者를 선정하는 Discriminant Function System(DIF) 파라메타를 조정하기 위해 매년 일정수의 표본을 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TCMP)에 의거하여 無作為抽出함으로써 시행하고 있는 조사방식’과 유사한 형태이다²⁾. 우리나라의 기준조사는 記帳·申告內容이 성실하고 당해 업종의 보편적인 기준치를 선정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자 중에서 地域別·規模別로 고르게 선정한다. 예를 들면 소득표준율조사, 신고기준율조사, 생산수율조사, 입회조사, 부동산 기준시가조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의 경우 장기적으로 申告納付制度가 정착되고 각종 標準率에 의한 행정이 지양될 경우 基準調査에 의한 稅務調査 역시 一般調査와 마찬가지로의 형식을 취할 것으로 생각된다.

5) 稅務調査의 定義

本法에서 稅務調査라 함은 一般調査, 特別調査, 追跡調査, 基準調査 등을 포함하며 납세자의 會計帳簿檢査 및 申告誠實度 또는 誠實納稅協力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반 사항을 조사하는 일련의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2) 미국에서는 1995년 10월부터 지금까지의 무작위추출대상자보다 훨씬 많은 대략 15만 3천명의 個人과 法人의 신고서를 조사할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Myers(1995) 참조.

나. 納稅者憲章의 交付 및 代理權

1) 納稅者의 情報公開 要求權 및 納稅者憲章의 交付

납세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稅務調査와 관련하여 事前通知와 아울러 納稅者憲章의 교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稅務調査는 납세의무자의 경제행위에 의하여 세법이 정하는 課稅要件이 성립하였는가 그리고 이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는가를 사후적으로 帳簿, 書類, 기타 증빙에 의해 확인하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稅務調査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거래당사자이며 당해 사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협력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준비기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國稅基本法 附則에 규정되어 있는 稅務調査의 사전통지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법학자들이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³⁾. 첫째는 事前通報期限이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다. 현재의 調査開始 前 7일이 적정한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금 더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同 施行令에 나열되어 있는 필요적 통지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는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住所 또는 居所, 調査期間, 調査對象稅目 및 調査事由, 調査公務員의 人的事項, 其他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반드시 조사대상 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사사유는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과세공무원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 또는 “탈세혐의가 있는 때” 등과 같이 막연하게 규정되어서는 안된다.

3) 崔明根(1994, 1996), 李愚澤(1994, 1995) 참조.

현행 국세기본법 제85조의 2 단서는 “사전통지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재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원의 영장에 의한 경우” 등 객관적인 규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은 稅務調査時 納稅者憲章을 교부하여 납세자의 권리내용을 주지시킴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權益侵害에 대비하게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조항에 있어서 稅務調査란 기본법에 개념규정이 되어 있는 일반조사, 특별조사, 추적조사, 그리고 기준조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國稅廳이 현실적으로 運用하고 있는 賦課處分을 위한 實地調査(예컨대 租稅犯則調査, 所得稅 實地調査, 法人稅 定期調査, 附加價值稅 更正調査등)가 本條項의 納稅者憲章 교부대상 稅務調査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과는 달리 단순한 확인이나 미비한 자료의 보완을 위한 조사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2) 稅務代理人 依賴權

우리나라의 경우 稅務調査를 받을 때에 조세전문가인 납세의무자의 代理人이 입회하거나 대리조사를 받는 제도가 없었다. 그러나 1995년 세무사법의 개정으로 稅務官署의 調査 또는 處分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를 대신한 意見陳述의 代理가 가능해졌다. 이와 같이 稅務代理人에게 稅務調査時 意見陳述 代理權을 부여함으로써 납세자권리구제의 실효성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稅法은 그 내용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여 일반납세자가 그 내용을 熟知하여 稅務公務員의 質問·檢査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稅務調査에서 자기의 이익이 되는 증빙을 준비하여 適時에 제출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 稅務調査의 운영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마찰과 낭비적인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납세의무자에게 稅務調査時 이를 稅務代理人에게 의뢰하여 대리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아울러 조세관련 정보에 있어 상대적인 衡平을 위해서도 납세자는 稅務調査過程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할 권리 및 그들을 代理人으로 선임하여 조사를 대리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納稅情報 關聯 秘密保障 및 프라이버시 保護

申告納付制度下에서의 租稅行政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納稅協力の 토대는 납세자의 自己情報統制에 관한 權利保障 및 納稅者와 課稅官廳間에 相互信賴關係를 통해서 형성된다. 따라서 納稅者가 제출한 신고서 및 기타 부속서류, 그리고 課稅官廳이 수집한 개인의 납세정보는 비밀사항으로 분류되어 세법에서 정한 課稅目的을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납세자료를 對外秘(confidential)로 분류·관리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자기 정보에 대한 統制權을 갖고 있다. 세무공무원이 秘密嚴守義務를 위반한 경우 상당히 무거운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며 타기관의 자료요청시에도 납세자료의 제공은 엄격히 규제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예외적인 규정으로 法院의 審理目的, 그리고 검찰을 비롯한 刑事當局의 租稅犯 訴追目的을 위해서 납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는 당해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납세자료를 일반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어 특별한 취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이 職務上 知得한 秘密의 漏泄禁止에 대해서는 형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處罰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례는 극소수이다. 공공기관의 個人情報 保護에 관한 法律에 의거하여 DB자료는 타 법률이 정하는 所管業務 遂行과 犯罪搜查 및 公訴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실제 운영에 있어서 국회, 청와대, 감사원,

검찰 등으로부터 일반적인 정보제공요구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납세자의 自己情報 統制權 侵害 可能性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세기본법에 納稅資料에 관한 秘密保障 및 프라이버시의 保護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라. 稅務調查 結果의 書面通知

稅務調查가 종결되고 이에 기초하여 租稅債權債務關係를 확정하기 전에 확정절차의 일환으로 조사공무원이 문서에 의해 稅務調查의 결과와 이에 따른 부과처분 내용을 피조사자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 등 대부분의 OECD 제국에서도 이와 같은 절차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은 전술한 바 있다.

稅務調查의 終了時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세무조사의 범위는 앞에서 論議한 개념규정에서 나열한 네 가지 형태의 세무조사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서식에는 事實 認定, 關聯稅法條項規程, 判斷理由 등을 부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현행 國稅基本法 제85조의 2(稅務調查時 事前通知)의 규정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며, 國稅廳 訓令인 課稅適否審査 事務處理規程(國稅廳 訓令 제1237호) 제5조의 決定前 通知 條項을 국세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當爲性을 나타내는 것이다. 폐업자 조사시와 같이 납세자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는 조사결과 통지의 예외사유를 명시하여 이 경우 公示送達 등의 방법에 의해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事前審査制度인 課稅適否審査 事務處理規程의 프로그램적인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를 법제화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異議申請, 審査請求, 審判請求, 行政訴訟 등 事後救濟制度는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처리기간이 길며 사후적이라는 의미에서 納稅者權益保護에 미진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告知前 審査規程을 발전시킨 課稅適否審査制度는 制度의 의의와 구체적인 審査節次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다. 重複調査의 禁止

현행 稅務調査運營準則(國稅廳 訓令 제1169호) 제20조는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一般調査는 원칙적으로 통합조사를 실시함으로써 納稅地나 稅目を 달리하여 연 2회 이상 조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체계 내에서는 賦課權의 除斥期間(현재 5년 내지 15년) 내에는 回數의 제한없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 반복해서 稅務調査(更正決定)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重複調査禁止의 원칙은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크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稅務調査의 통합화 및 과학적인 조사 기법의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 租稅節次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개 重複調査禁止의 규정을 법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統合調査의 개념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本條項의 重複調査에 대한 정의를 同一 稅目 및 同一 課稅期間의 稅務調査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重複調査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租稅連脫 및 脫漏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租稅連脫의 혐의란 고의성이 포함된 조세법칙행위를 의미하고, 脫漏의 혐의란 과세자료나 정보를 통하여 중요한 불성실에 대한 증빙이 확보된 경우를 의미한다.

바. 其他 事項

우선 국세기본법에 조세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경우 개별 세법과의 상충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절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개별 세법에 우선한다는 사항이 명시되

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稅務調査에 따른 課稅處分뿐만 아니라 申告納稅稅目에 대한 更正處分, 부과과세 세목에 대한 과세처분시 현재보다 상세하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상, 그리고 사실상의 이유를 부기하게 하는 처분의 이유부기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처분을 과세적부심사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 법조계에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은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5조에서 조사의 개념으로 실지조사, 추계조사, 서면조사 등 모든 조사를 포함시킨 점, 그리고 결정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국세청 훈령을 법규범의 수준으로 통합하는 수준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제3자 조사에 관한 제한장치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거래처등 제3자에 대한 무조건적, 무제한적인 조사를 허용하면 납세자 본인의 신용, 명예, 사업 등에 치명적인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인과 제3자간의 조사순서에 대해서는 우선 본인을 조사한 뒤 제3자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제3자의 범위도 문제가 되는 당해거래의 상대방에 국한시켜야 할 것이다.

4. 納稅者權利와 義務의 均衡摸索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所得稅가 申告納付制로 전환되고 金融所得綜合課稅가 실시되는 등 중요한 租稅制度가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OECD 가입 등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租稅行政의 선진화·세계화를 위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納稅者들은 課稅當局의 재정권력과 정보의 비대칭에 의해 납세의무만을 강요당해 온 측면이 있으며 과세당국과의 대등한 지위를 감히 넘보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經濟의 規模가 과거와는 달리 엄청나게 커졌으며 이에 따라 납세자의

稅負擔 역시 크게 증가했고 民主化·情報化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劣位에 있던 납세자의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權益保護, 납세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納稅者權利憲章의 제정을 계기로 납세자의 알 權利, 納稅情報의 自己統制權 및 秘密保障, 重複課稅의 禁止, 代理人의 稅務調査 助力權, 稅務調査 終了時 結果통지 의무화 등을 납세의무와 함께 납세자의 권리로 범제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아울러 현재 각 세법에 혼재되어 있는 稅務調査에 대한 개념규정을 통합하여 國稅基本法에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앞에서 지적하였다⁴⁾. 납세자의 재산권 그리고 경제행위에 중대한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稅務調査(tax audits)의 명확한 정의가 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법치주의의 구현과 행정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조속히 조세절차법을 포함하는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이 제정·실시되어야 한다. 한편 同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앞으로 제정되어야 할 「정보공개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그리고 「국민 사생활 및 기업 비밀 보호법 (Privacy Act)」과의 상호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법령체계의 齊合性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民財產權과 직결되는 租稅分野에서 주체인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適正節次法 制定에 앞서 「국세기본법」에 納稅者의 權利라는 章을 신설하는 것은 納稅者權利憲章 제정의 법적 구속력 부여와 실효성의 확보에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 틀림없다. 이와 아울러 納稅者의 權益保護는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 加算稅를 強化하는 등

4)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은 국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과 「관세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 규정을 이들 세법에서도 원용토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國稅徵收權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대폭 연장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되도록 하는 방안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건전한 納稅環境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V. 納稅者權利憲章 制定의 基本方向

우리나라의 租稅關聯 절차규정들은 納稅者의 義務를 강조·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어 納稅者의 權利保護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다. 비록 國稅廳은 각 세무서 민원실에서 納稅者 苦衷相談을 실시하고 「稅務公務員 倫理綱領」, 「稅務調查 運營準則」 및 세목별 「業務處理規定」 등을制定하여 納稅者 權利保護에 노력하여 왔으나 이러한 것들은 國稅廳 내부 규정으로 운영되어 法的 拘束力을 갖지 못하는 까닭에 納稅者 權利保護의 실효성 측면에서 상당한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納稅者의 權利를 적극적으로 保護하기 위해서는 法的 拘束力을 지닌 「納稅者權利憲章」制定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強調되어야 할 것이다.

본장에서는 「納稅者權利憲章」이 어떠한 형식으로 制定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基本方向을 提示하고 나아가 「納稅者權利憲章」制定時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主要內容을 주요국의 納稅者 權利保護 實態를 比較分析함으로써 제시하고자 한다.

1. 納稅者權利憲章 制定의 形式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美國을 비롯한 先進諸國에서는 納稅者權利憲章을 제정하고 있으나 그 性格은 매우 다양하다. 여러 外國들의 憲章을 그 性格에 따라 類型化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政府의 政策方針 내지 課稅官廳의 政策宣言으로서의 憲章을 제정하고 公表한 다음 이와 같은 憲章에 따라 稅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들을 철저히 재평가하고 정비한 국가들인데, 캐나다 및 영국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먼저 租稅節次法을 제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一般國民과 納稅者에 대하여 간결하고 非專門的인 文體의 宣言書(statement)를 작성하여 憲章으로 公表하는 국가이다. 最近의 프랑스, 뉴질랜드, 아일랜드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셋째, 우선 納稅者基本法으로서 「納稅者權利保障法」내지 「納稅者權利章典法」을 제정하고, 이것을 稅法典의 節次篇 내지 總則篇에 삽입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稅法上 權利章典의 趣旨에 따라 節次的 改革을 단행한다. 더욱이 그 節次條項의 趣旨를 一般國民과 納稅者에게 周知시킴과 동시에 세무공무원이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비전문적인 文體로 쓰여진 宣言書를 작성하고 공표하는 국가이다. 美國의 여러 州가 이에 해당한다.

〈表 V - 1〉 納稅者權利憲章의 制定形式

정부의 선언방법	조세절차법 제정을 선행하는 방법	납세자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이를 세법에 흡수시키는 방법
정부의 방침 내지 국세청의 선언으로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 공표한 후 이를 토대로 세법상의 절차규정을 검토 채정비하는 방법	조세절차법 제정을 선행하고 이를 간결하고 평이한 문체로 선언서를 작성하여 정부가 선언	납세자권리보장법을 제정 후 이를 일반세법의 절차편 내지 통칙편에 흡수시키는 방법
영국,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아일랜드	미국

納稅者權利憲章 制定의 形式은 아주 重要하다. 잘 만들어진 내용물을 어떠한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그 內容物이 眞價를 發揮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는 마치 “된장은 뚝배기에 끓여야 제맛이 난다”는 일상적인 생각과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納稅者權利憲章에 包含되어야 할

내용을 어떠한 形式으로 制定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 代案을 제시하고 각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第1案：「國稅基本法」에 ‘納稅者 權利’라는 새로운 章을 新設하고 이에 근거하여 國稅廳長이 納稅者權利憲章을 制定·公布

현행 「國稅基本法」은 租稅不服節次, 稅務調査의 사전통보조항 등 納稅者 保護規定을 일부 갖추고 있으므로 새로운 법의 제정보다는 「國稅基本法」에 새로운 장을 신설하여 실질적으로 納稅者의 權益을 保護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세정책임자인 국세청장이 憲章을 制定·公布함으로써 실효성있는 權益保護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법률에 근거한 권리선언의 형태로서 헌장 자체에 法的 拘束力이 있으며 헌장 내용이 주로 집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집행책임자인 국세청장이 제정·공포함으로써 자기 拘束力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權益保護를 요구해야 한다는 當爲의 形式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위적 형식보다는 權益保護의 實效성과 法的 拘束力이 중요시되는바, 第1案은 현실성있는 접근이라 생각된다.

第2案：租稅節次法 制定을 先行하고 政府가 「納稅者權利憲章」을 宣言

이는 먼저 조세절차상 納稅者 權利保障을 提高하는 租稅節次法을 制定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고 평이한 문체로 된 宣言書(혹은 안내서) 형태로 政府(재정경제원장관 혹은 국세청장)가 宣言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형태의 제정형식을 취하는 것이 實效性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나 이는 상당히 방대한 규모의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는 데다 納稅者權利憲章의 制定이 상당기간 遲延될 可能性이 높다는 短點이 있다.

第3案：「納稅者權利憲章」(준헌법적인 기능을 가진 헌장)을 議會에서 議決·宣言하고 憲章의 취지에 합당한 조문을 「國稅基本法」에 反映

조세가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볼 때 納稅者權利憲章을 議會에서 議決·宣言하는 것은 당연하며 租稅分爭을 해결할 때 법원의 規範的 判斷基準이 될 수 있다는 長點이 있다. 그러나 納稅者權利憲章의 취지를 반영하는 國稅基本法이 개별 조세절차에 관한 법규정들과 연계되는 과정에서 實效性이 다소 稀釋될 수 있다는 短點도 갖고 있다.

第4案：「納稅者權利憲章」을 議會에서 議決·宣言하고 「國稅基本法」 및 각종 國稅廳 내부규정 중 納稅者 權利 保護에 관한 條項을 拔萃·整理하여 「國稅行政 執行上 納稅者 權利 保護에 關한 法律(假稱)」을 制定

第4案은 第3案의 長點을 가지고 있으나 상당히 방대한 規模의 작업이 수반되는 短點을 가지는 것이 特徵이다.

納稅者權利憲章의 制定이 단순히 課稅當局의 施惠的 宣言에 그치는 경우, 이러한 憲章의 제정은 과세당국을 구속하는 法的 效力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國民教育憲章」이 법적 구속력이 없이 美辭麗句들만 나열해 놓은 그 이상·이하의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는 점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納稅者權利憲章 제정의 형식은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納稅者 權利憲章」制定의 當爲의 방향 및 現實的 제반 여건을 勘案한다면 第1案의 방식으로 「納稅者 權利憲章」이 制定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納稅者權利憲章」에 包含되어야 할 內容

納稅者의 權利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納稅者權利憲章」制定의 必要性이 인정된다는 前提下에서 主要國의 納稅者 權利保護의 概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共通的으로 포함하는 內容은 다음의 <表 V-2>에서 알 수 있듯이 公平한 待遇, 秘密保護, 情報提供, 苦衷處理 및 不服請求權의 保障, 稅務相談提供, 納稅者義務의 再確認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林一道(1992)¹⁾는 納稅者權利憲章(案)을 제시한 바 있다. 외국의 사례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納稅者權利憲章을 제정할 경우 納稅者權利憲章에 포함되어야 할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모든 稅金問題의 公正한 處理 및 모든 納稅者에 대한 平等한 待遇를 보장한다.
- ② 租稅行政의 일관된 흐름하에서 적절한 情報와 資料를 提供한다.
- ③ 稅務調査를 함에 있어서 조사이유의 제시와 納稅者 권리의 고지, 조사일정의 사전통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부여, 조사내용에 관하여 녹음하거나 기록할 권리의 허용, 사전구제제도의 도입 등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 ④ 效率的인 서비스의 提供에 노력해야 한다.
- ⑤ 納稅者는 그가 잘못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 誠實하며 眞實하다는 推定을 받는다.
- ⑥ 納稅者 個人的인 秘密을 保護해야 한다.
- ⑦ 정부는 納稅者의 納稅順應費用, 과세관청의 徵稅費用이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한다.

1) 林一道, 「租稅法律主義에 관한 研究」, 朝鮮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1992.

〈表 V-2〉 主要國 納稅者權利憲章의 比較

	制定年度와 制定名稱	共通된 內容	그외 言及된 內容
프랑스	稅務調査에서의 憲章(1975) 租稅節次法(1981) 納稅者憲章(개정, 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納稅者에게 納稅에 관한 資料 및 情報의 제공 ○ 納稅者의 프라이버시 및 秘密保護(단, 뉴질랜드의 경우 명시화되어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代理人 依賴權 인정 ○ 納稅者 동의에 의한 課稅 ○ 調査通知 節次와 內容의 細部事項 言及
캐나다	納稅者 權利宣言 (1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納稅者에 대한 鄭重하고 배려있는 대응 ○ 納稅者 苦衷處理 및 調査 結果 不服提起權 保障 ○ 納稅者에 대한 公平한 대우와 公正한 租稅徵收 ○ 納稅者權利의 告知 ○ 國稅廳 業務의 效率化와 租稅徵收節次의 적정화 ○ 納稅者에게 稅務相談 提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納稅者의 誠實性 推定 ○ 獨立된 納稅審査를 받을 權利 ○ 未納付狀態下에서의 審査 ○ 納稅者權利 行使에 대한 國稅廳 協助 강조 ○ 2개 國어 併用 서비스
영국	納稅者憲章 (舊憲章, 1986) 新納稅者憲章 (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옴부즈맨 설치 ○ 獨立된 納稅審査를 받을 權利 ○ 未納付狀態下에서의 審査 ○ 國稅廳 業務 責任所在 명시 ○ 納稅者 義務事項 명시
미국	納稅者로서의 귀하의 權利(1988) 納稅者權利保障法 (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代理人 依賴權 保障 및 調査內容 錄音權 인정 ○ 納稅者의 誠實性 推定 ○ 超過納付稅額의 환부 ○ 徵稅節次 명시 ○ 加算稅 취소의 경우 ○ 特別相談 실시 ○ 稅額更正通知의 경우 ○ 信義誠實의 원칙 적용 ○ 爭議訴訟費用 보상 ○ 稅法上 損害賠償 ○ 納稅者 서비스 擔當組織 명시
뉴질랜드	PPP선언(1986) 納稅者憲章(1994)		

- ⑧ 納稅者의 異議提起에 대하여 迅速하게 處理, 解決한다.
- ⑨ 納稅者에게 正직하고 성실한 納稅義務의 履行을 촉구한다.

가. 國稅基本法에 包含되어야 할 內容

1) 納稅者權利憲章의 交付

세무조사시 納稅者權利憲章을 교부토록 의무화하여 납세자가 사전에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 인지하고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납세고지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는 行政力 浪費의 여지가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에 납세자권리헌장에 의해 納稅者의 權利가 保護되고 있음을 명기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重複調查의 禁止

조세의 脫漏嫌疑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조사를 금지하여 重複調查로 인한 納稅者의 不便을 解消한다.

3) 告知前審査制度

현재 國稅廳 訓令으로 되어 있는 고지전심사제도와 같은 事前救濟制度를 국세기본법에 규정하여 納稅者의 權益을 사전에 구제한다.

4) 稅務調查 結果의 書面通知

정부는 稅務調查를 완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決定決議書 寫本 등 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稅務代理人 依賴權

납세자는 稅務調査를 받을 때 변호사 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포함)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본인을 대신하여 調査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6) 納稅者의 個人秘密 保護

과세관청에 제출된 개인납세자의 情報資料는 최대한 保護한다.

7) 誠實性 推定

불성실하다는 증거가 없는 한 납세자는 성실하다는 추정을 받는다. 다만 장부 등 證憑에 의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納稅者가 義務를 履行하지 않는 경우 또는 無申告者의 경우 추계에 의한 과세권을 과세당국이 가진다.

나. 納稅者權利憲章에 包含되어야 할 內容

1) 公平한 課稅를 받을 權利

납세자는 稅金을 適法하게 결정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鄭重하고 配慮있는 應對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으로부터 항상 鄭重하고 親切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프라이버시와 秘密嚴守

課稅官廳에 제출된 납세자의 個人情報는 保護받을 권리가 있다.

4) 稅務調查의 事前 및 事後結果 通知

세무조사시 납세자는 調查前 및 調查後 書面通知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租稅의 不服申請 權利

납세자는 不當課稅處分에 대하여 不服申請할 權利가 있으며 불복신청시 稅務公務員은 절차에 대한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不服申請에 대해서 적절하고 신속한 처리를 할 의무가 있다.

6) 納稅協力費用과 徵稅費用의 最小化

納稅協力費用과 徵稅費用의 最小化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7) 納稅者權利 行使에 대한 課稅官廳의 協助

납세자는 본인의 權利를 行使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직원으로부터 적극적인 協助를 받을 권리가 있다.

8) 誠實한 納稅義務의 履行促求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해서 부여된 納稅義務를 성실히 履行해 줄 것을 촉구한다.

VI. 結論 및 要約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租稅는 거두는 국가입장에서 經濟·社會發展에 필요한 財源調達 手段과 政策實現手段으로 활용하는 데 치중해 왔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조세를 실제 납세하는 국민의 입장은 등한시하여 納稅者의 基本權이 많이 侵害되어 왔다. 아직도 納稅者의 地位는 과세자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劣位에 놓여 있는 상황이며 종래의 租稅行政에 관한 節次法 내지 節次規定은 納稅者 권익의 옹호보다는 주로 納稅者의 義務를 強調 또는 確認하는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主要國의 納稅者權利憲章의 내용을 비교·조사한 결과 納稅者權利憲章에 포함되어야 할 主要內容은 첫째, 모든 세금문제의 公正한 處理 및 모든 納稅者에 대한 平等한 待遇 保障, 둘째, 조세행정의 일관된 흐름하에서 적절한 情報과 資料의 提供, 셋째, 稅務調査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사사유의 제시와 納稅者權利의 고지, 조사일정의 사전통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부여, 조사내용에 관하여 녹음하거나 기록할 권리의 허용, 사전구제제도의 도입 등을 제도화, 넷째, 效率의 서비스의 提供, 다섯째, 納稅者는 그가 잘못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 誠實하며 眞實하다는 推定, 여섯째, 납세자 個人의 秘密保護, 일곱째, 정부는 納稅者의 納稅順應費用·과세관청의 徵稅費用이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 여덟째, 납세자의 異議提起에 대하여 迅速하게 處理·解決, 아홉째, 납세자에게 정직하고 성실한 納稅義務의 履行을 促求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納稅者權利憲章을 制定하는 形式으로는 「國稅基本法」에 ‘納稅者 權利’라는 새로운 장을 신설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이 納稅者權利憲章을 制定·公布하는 방안, 租稅節次法 제정을 先行하고 政府가 納稅者權利憲章을 선언하는 방안과 納稅者權利憲章을 議會에서 議決·宣言하

고 憲章의 취지에 합당한 조문을 國稅基本法에 反映하는 방안 또는 가칭 「國稅行政 집행상 納稅者 權利 保護에 관한 法律」을 制定하는 方案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각기의 長·短點이 있으므로 制定形式의 선택은 慎重한 檢討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강조할 점은 納稅者權利憲章이 단순히 과세당국의 시혜적 선언에 그치는 것을 止揚하고 法的 拘束力을 지닌 積極的이고 實質的인 方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國稅基本法」에 ‘納稅者權利’라는 새로운 장을 신설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두어 이에 근거하여 세정책임자인 국세청장이 「納稅者權利憲章」을 制定·公布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 國稅廳, 『課稅適否審查 事務處理規定』, 1996.
- , 『國稅徵收 事務處理規定』, 1993.
- , 『國稅統計年報』, 1995.
- , 『法人稅 綜合管理規定』, 1991.
- , 『附加價值稅 事務處理規定』, 1993.
- , 『稅務公務員 倫理綱領』, 1993.
- , 『稅務調查 運營準則』, 1994.
- , 『所得稅 事務處理規定』, 1993.
- 大韓商工會議所, 『國稅行政에 관한 意見調查 結果』, 1992.
- 朴釘洙·孫光洛, 『國稅行政改革方案 III : 主要國의 國稅行政』, 韓國租稅研究院, 1994.
- 柳時權 外 7人, 『國稅行政 改革方案』, 韓國租稅研究院, 1994.
- 李愚澤, 『租稅行政의 適正節次와 合理化에 관한 研究 : 納稅者의 權益保護 및 稅政의 現代化 方案』, 韓國租稅研究所, 1995.
- , 「納稅者의 權益保護와 獨逸의 稅務調查」, 계간 세무사, 1994.
- 林一道, 「租稅法律主義에 관한 研究」, 朝鮮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2.
- 田迴秀, 「納稅者權利章典 II」, 미발표자료, 1992.
- 崔 洸·李愚澤, 『附加價值稅의 政策方向』, 韓國稅務士會 附設 韓國租稅研究所, 1988.
- 崔明根, 『納稅者의 權益保障 提高에 관한 研究 : 租稅節次法의 適正性 保障을 中心으로』, 韓國稅務士會 附設 韓國租稅研究所, 1996.
- , 『主要國의 稅務行政改革 動向 : 納稅者基本權의 保障을 中心으로』, 한국세무협회, 1994.

- , 「稅務調査와 納稅者의 權益保護」, 계간 세무사, 1994.
- 韓國租稅研究院, 『先進諸國의 納稅者權利憲章』, 韓國租稅研究院, 1994.
- 石村耕治, 『先進諸國の 納稅者權利憲章』, 中央經濟社, 1993.
- Douglas W. Briggs Jr., “Focus on the IRS,” *Tax Notes*, Vol. 70, No. 2, 1996.
- Ireland Inland Revenue, *Taxpayer's Charter of Rights*, 1993.
- New Zealand Inland Revenue, *Your Rights and Obligations*, 1994.
- OECD, *Taxpayer's Rights and Obligations: A Survey of the Legal Situation in OECD Countries*, 1990.
- Randy Myers, “The Naked Truth about Tax Audits,” *IDD Information Services*, 1995.

附 錄

I. OECD 國家의 納稅者權利 比較*

II. 主要國의 納稅者權利憲章

* OECD가 1990년에 발행한 「Taxpayers Rights and Obligations」를 기초로 하여 가능한 한 최근 자료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I. OECD 國家의 納稅者權利 比較

〈附表 I - 1〉 納稅者權利憲章의 有無

귀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권리들을 기술한 공문서(예 : 납세자 헌장)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첨부해 주시고 그 문서의 특성을 설명해 주십시오(예 : 기존 법률과 행정적인 실무를 결합하였습니까? 또는 새로운 권리를 첨가하였습니까?)¹⁾

국 가	납세자헌장 또는 선언	기 타
호 주	×	정보공개법(1982) 사생활보호법(1988)
오스트리아	×	납세자는 본인의 납세자료에 접근할 수 있음.
벨 기 에	×	-
캐 나 다	납세자권리선언(1985)	정보공개 및 사생활보호법(1983)
덴 마 크	×	-
핀 란 드	×	-
프 랑 스	납세자헌장(1987)	행정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1978년 법) 행정적 결정의 유도(1978년 법)
독 일	×	-
그 리 스	×	-
아 일 랜 드	납세자헌장(1993)	-
이 탈 리 아	×	-
일 본	×	-
네 덜 란 드	×	정부 정보(공공 접근)법(1987)
뉴 질 랜 드	원칙에 관한 성명(1986) 납세자헌장(1994)	공적 정보법(1982)
노 르 웨 이	×	-
포르 투 갈	×	시민권에 관한 지침(공표될 예정임)
스 페 인	×	-
스 웨 덴	×	-
스 위 스	×	-
터 키	×	-
영 국	납세자헌장(1986)	-
미 국	납세자권리장전(1988)	정보공개법(1976) ; 내국세입법의 비밀보장 및 공표 조항 (6103조) ; 미국세정 공표(납세자로서의 당신의 권리)

註 : 1) 대다수 국가들의 경우 납세자의 특수한 권리에 대해 법률상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附表 I - 2〉 納稅者 案内內容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세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세입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설명한 또는 이용가능한 조세감면조치(tax reliefs)에 대해 기술한 간행물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다음 사항에 대해 이용가능한 안내서 :					
	납세신고서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조세감면 조치의 이용가능성	세제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관한 간행물		세입이 어떻게 쓰이는가	무료전화상담
			일반 대중	학교용 특수교재		
호 주	○	○	○	○	○	○
오스트리아	○	○	○	×	×	×
벨 기 에	○	○	○	×	×	×
캐 나 다	○	○	○	○	×	○
덴 마 크	○	○	○	○	○	×
핀 란 드	○	○	○	×	×	×
프 랑 스	○	○	○	교육패키지	○	×
독 일	○	○	○	×	○	×
그 리 스	○	○	○	×	×	×
아일랜드	○	○	○	×	×	×
이탈리아	○	○	○	×	×	×
일 본	○	○	○	○	○	×
네덜란드	○	○	○	○	○	○
뉴질랜드	○	○	○	교육패키지	○	×
노르웨이	○	○	○	×	일부 지방관청	×
포르투갈	○	○	○	×	○	×
스페인	○	○	○	×	○	○
스웨덴	○	○	○	교육패키지	○	×
스위스	○	○	○	○	○	×
터 키	○	○	○	×	×	×
영 국	○	○	○	교육패키지	×	×
미 국	○	○	○	○	○	○

〈附表 I -3〉 稅制 適用의 原則

과세관청은 납세자들이 '적정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 법 아래서 두 가지 상이한 조세제도가 주어질 경우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가?
- 세액공제나 법률상에 규정된 다른 조세감면조치가 자동적으로 납세자에게 적용되는가 또는 납세자가 이러한 감면조치의 적용을 신청해야만 하는가?

호 주	과세관청은 다음 사항을 보증해 줄 의무를 진다:		
	가장 유리한 조세제도가 적용된다	관청에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조세감면자격이 부여된다	기타 주석사항
호 주	×	실제로는 ○	완전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중임.
오스트리아	○	×	-
벨기에	○	○	-
캐나다	×	실제로는 ○	신고납세제도
덴마크	○	×	상당한 차이가 발생될 경우 납세자 지침이 규정될 것임.
핀란드	×	×	-
프랑스	○	×	-
독일	○	○	납세자는 유리한 제도/감면 조치에 대해 고지를 받음.
그리스	○	○	-
아일랜드	×	실제로는 ○	-
이탈리아	×	일반적으로 ○	-
일본	○	×	-
네덜란드	실제로는 ○	○	납세신고서를 제출하는 데 무료로 도움을 줌.
뉴질랜드	○	○	-
노르웨이	실제로는 ○	특정 감면조치의 경우, 실제로는 대부분 적용되지만	-
포르투갈	실제로는 ○	특정 감면조치의 경우	-
스페인	×	×	-
스웨덴	○	○	납세자는 유리한 제도에 대해 고지를 받음.
스위스	○	○	-
터키	○	○	-
영국	×	×	실제로는 분명히 납세자에게 자격이 있다고 보여지는 그러나 청구되지 않은 감면조치에 대해 주의가 기울여짐.
미국	○	○	-

〈附表 I - 4〉 課稅 決定事項의 變更原則

과세관청은 그들이 이미 결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데 대하여 몇년의 기한을 부여받고 있습니까?

		재조정(reassessment)이 실시될지도 모른다:		
호	주	최초 결정일로부터 발효되는 일반적인 규칙	납세자가 정보를 허위진술하였거나 조세사기가 발생한 경우 (최초 결정일로부터)	시효는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의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3년		제한 없음(사기)	사생활보호법이 발효중임.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평은 손해를 배상토록 명령하고, 정부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그들의 실무나 절차를 변경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사생활담당관에게 제기할 수 있음.
오스트리아	5년		10년(사기)	○
벨기에	3년(경정연도의 1월 1일로부터)		5년(경정연도의 1월 1일로부터)	○
캐나다	3년		제한 없음(사기)	일반적으로 × (일부 제한된 조건하에서 나타남)
덴마크	5년 3년(자유재량체제)		일반적인 규칙보다 더 긴 기간	○
핀란드	2년		5년	×
프랑스	3년		3+2년(범죄사건)	×
독일	4년		10년(일반적으로)	○ (만약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면)
그리스	3년(최종 결정일로부터)		10년	×
아일랜드	10년(일반적인 규칙) 6년(신고납세인 경우)		제한 없음(사기 또는 태만)	○
이탈리아	소득세의 경우 5년 (납세신고서가 없을 때는 6년) 부가가치세의 경우 4년 (납세신고서가 없을 때는 5년)		좌동	×
일본	3년(신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신고서가 없는 경우)		7년	×
네덜란드	5년		5년(범죄는 12년)	○
뉴질랜드	4년(중세액) 8년(환급금)		제한 없음(사기)	×
노르웨이	10년		제한 없음	○
포르투갈	5년(환급금) 5년(중세액)		5년	법적으로 가능함.
스페인	5년		5년	일반적으로 ×
스웨덴	8개월		5년(조세사기의 경우 더 긴 기간)	○
스위스	5년		5년	×
터키	5년		5년	×
영국	6년		20년	×
미국	최소한 3년		6년(사기를 칠 의도는 없지만 소득의 상당한 누락이 발생한 경우) 제한 없음(사기)	일반적으로 ×

〈附表 I -5〉 음부즈맨制度

전체로서 세무행정에 대한 또는 특별하게 과세상의 문제점에 대한 음부즈맨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과세와 관련된 기능 및 권한은 무엇입니까?

호 주	다음 사항에 대한 음부즈맨 제도가 있습니까?		과세와 관련된 주요 기능			주석사항
	과 세	과세를 포함한 공공 행정	불평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	결론은 다음과 같다 : 법적으로 의무를 지우는	실제로 준수되는	
호 주	×	○	○	×	○	사생활보호법이 발효중임. 사생활에 관련된 불평은 배상해 줄 수 있고 실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생활담당관에게 제기할 수 있음.
오스트리아	○	○	○	×	○	-
벨 기 에	×	×	-	-	-	불평을 경청하기 위해 자문위원회가 존재함.
캐 나 다	×	×	-	-	-	-
덴 마 크	×	○	○	×	○	-
핀 란 드	-	○	○	×	○	-
프 랑 스	-	○	○	×	○?	-
독 일	×	×	-	-	-	의회청원위원회
그 리 스	×	×	-	-	-	-
아일랜드	×	○	○	×	○	-
이탈리아	×	×	-	-	-	-
일 본	×	×	-	-	-	-
네덜란드	×	○	○	×	○	법률에 관심을 가지는 대중의 각 구성원들에 의해서 제기된 불평을 다루는 정부정책을 감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둠.
뉴질랜드	×	○	○	×	○	-
노르웨이	×	○	×	×	○	-
포르투갈	×	○	×	×	때때로	과세에 대해서 특별한 권한은 없지만 건의하고 조사할 수 있음.
스페인	×	○	○	×	때때로	-
스웨덴 (실제로는)	○	-	○	×	○	-
스위스	×	×	-	-	-	-
터키	×	○	-	-	-	-
영국	×	○	×	×	○	-
미국	○	×	납세의무의 확정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절차에 관한 ○	음부즈맨이나 다른 공무원에 의해서 수정 또는 취소되지 않으면 ○	○	관청은 납세자권리장전에 의해 강화됨.

〈附表 I -6〉 納稅者 資料의 利用規則

납세자에 관한 정보가 전산화된 경우, 이러한 자료은행을 과세관청이 이용하는 데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호	주	전산화된 자료은행의 이용에 적용되는 규칙		주석사항
		수작업으로 축적된 정보와 동일	특별한 규칙 ¹⁾	
		비밀보장에 관한 법규	사생활보호법과 지침은 수치정보를 수록한 납세자료의 비밀보장에 대해 다루고 있음.	자기테이프에 저장된 대부분의 정보는 다른 공인된 정부부처에 제공되고 있음.
오스트리아	-	-	전산화된 자료의 보호에 관한 법	-
벨기에	비밀보장에 관한 법규	-	-	-
캐나다	비밀보장에 관한 법규	-	-	-
덴마크	법규가 적용됨.	-	-	자료은행에의 접근은 적절한 보안조치에 의해 통제됨.
핀란드	비밀보장에 관한 법규	-	-	-
프랑스	-	-	전산화된 자료의 보호에 관한 법(1978)	-
독일	비밀보장에 관한 법규	-	자료보호법	-
그리스	적용할 수 없음(완전한 데이터베이스가 도입되지 못했음).	-	-	-
아일랜드	비밀보장에 관한 법규	-	-	전산화된 자료에의 접근은 상징(badge)/암호(password)에 의해 통제됨.
이탈리아	비밀보장에 관한 법규	-	-	-
일본	비밀보장에 관한 법규	-	-	-
네덜란드	비밀보장에 관한 법규	-	-	-
뉴질랜드	비밀보장에 관한 법규	-	-	-
노르웨이	-	-	전산화된 자료의 보호에 관한 법	자료관리당국은 상이한 파일에 대한 조회를 포함해 전산화된 자료파일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 감독함.
포르투갈	비밀보장에 관한 법규	-	-	-
스페인	비밀보장에 관한 법규	-	-	-
스웨덴	-	-	스웨덴의 자료법	자료감시기관은 법률 제정과 자료파일의 접근을 통제함. 조세자료에 대한 특별 조항.
스위스	법규가 적용됨.	-	-	-
터키	법규가 적용됨.	-	-	과세관청은 특별한 제한없이 자료은행에 접근할 수 있음.
영국	법규가 적용됨.	-	자료보호법	접근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통제함.
미국	비밀보장에 관한 법규(내국세법, 6103조)	-	-	개별 납세자들은 그들 자신의 납세신고서에 접근할 수 있음; 실질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제한된 계층의 사람들은 개인과 법인의 신고서에 접근할 수 있음. 특정 정부기관에 의한 그리고 특정 국회 위원회에 의한 극도로 제한된 접근이 이루어짐.

註: 1) 일반적으로 수작업으로 축적된 정보에 적용되는 규칙에 추가된 사항을 말함.

〈附表 I - 7〉 秘密保障

특히 과세관청에 부여된 조사권을 통해서 과세 목적에는 불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을 경우, 사생활보호 및 비밀보장(다른 정부부처나 기관에 어느 범위까지 정보를 공표해야 하는지를 포함해서)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까?

		다음 기관에는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		
		과세관청의 다른 부문	사회보장기구 ¹⁾	다른 법정단체 및 정부부처
호 주		○	○	○
오스트리아		○	○	○ (공익을 조건으로)
벨 기 에		○	○	○
캐 나 다		○	○, 제한적으로	○, 제한적으로
덴 마 크		○	○	○
핀 란 드		○	○	○, 제한적으로
프 랑 스		○	○	○, 법적 구속을 조건으로
독 일		○	○	○, '공익'을 조건으로
그 리 스	○ (장관의 승인하에)		○	○
아일랜드		○	○, 규제에 따라	○, 합법적으로 예측된다면
이탈리아		○	○	×
일 본		○	×	×
네덜란드		○	○	○
뉴질랜드		○	×	○, 매우 제한적임(통제청).
노르웨이		○	○	○
포르투갈		○	○	제한적임
스페인		○	×	×, 범죄사건은 제외하고
스웨덴		○	○	○
스위스		○	○*	×
터 키		○	○	○, 그러나 극히 제한된 상황하에서만
영 국		○	제한적임	×, 관세와 소비세는 제외하고 (국세청)
미 국		○	○	○, 그러나 극히 제한된 상황하에서만

註: 1) 별표(*)는 신청에 의한 것임을 표시함. 모든 경우에 있어 이러한 정보는 이를 수령한 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여질 때에만 제공될 수 있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별히 법령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과세관청이 정보를 제공할 것임.

〈附表 I - 8〉 秘密保護

국내 관계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와 외국의 과세관청에서 입수한 정보간에 비밀보장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히 진술해 주십시오.

과세관청의 통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느 범위까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정보를 납세자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는지 간단히 진술해 주십시오.

호 주	양무 협정하에서 국내 관계당국과 외국의 과세관청에서 입수한 정보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 ¹⁾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적용되는 특수 조항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납세자 파일에 수록된 정보를 본인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는 범위 ²⁾
오스트리아	○	-	세무조사 또는 제삼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문서
벨기에	○	-	제삼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문서 또는 내부 문서
캐나다	×	더욱 엄격한 규칙	세무조사 또는 제삼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문서
덴마크	○	-	납세자를 불리하게 만들거나 법에 위배되는 문서, 협상정보
핀란드	○	-	소송에 관해 변호사들과 교환하는 문서, 세무조사를 불리하게 만드는 문서
프랑스	○	-	X
독일	○	-	국방, 통화, 국경, 사법권에서 발의된 절차상의 문제, 개인의 사생활 및 의거기록, 상업·산업상의 문제, 조세와 관세 위반에 대한 연구에 관련된 비밀이나 조세비밀보장법에 의해 보호되는 다른 비밀들을 손상시키는 문서
그리스	○	-	과세관청은 사실 또는 증거를 공표하는 데 자유 재량권을 갖고 있음.
아일랜드	○	-	내부의 작업 서류(working papers)와 기밀 서한, 제삼자에 관련된 정보
이탈리아	○	-	세무조사 또는 제삼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문서
일본	○	-	정규 법정에서 증인이 포함된 권례를 제외한 모든 관례
네덜란드	○	-	세무조사 또는 제삼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문서
뉴질랜드	○	-	세무조사 또는 제삼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문서
노르웨이	○	-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음.
포르투갈	○	-	세무조사 또는 제삼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문서
스페인	○	-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음.
스웨덴	○	-	세무조사 또는 제삼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문서, 그러나 고발인의 이름과 주장한 권리에 대해 알려줄 수 있음.
스위스	○	-	세무조사를 불리하게 만드는 문서
터키	○	-	세무조사 또는 제삼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문서
영국	○	-	세무조사 또는 제삼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문서
미국	×	협정하에서 입수된 정보의 이용에 대해서는 더욱 제한적인 규칙이 적용됨. 일례로 협정을 통해 얻은 정보는 卅稅를 위해 공표될 수 없음.	조사를 철중하여 처리하는 데 이용된 문서 또는 내부적으로 사전결정된 서한과 같이 법에 의해 허가된 범위내에서만

註: 1) 특별 협정이 국내의 법률보다 더욱 제한적인 비밀보장규칙을 제정한 경우 협정상의 규칙이 적용될 것임.
 2) 많은 국가들이 표의 마지막 열에 언급된 것을 제외하면 납세자 파일에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지만, 모든 국가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내부 작업 및 관리문서는 납세자에게 공표되지 않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해서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정이 '공익'의 기준에 관한 문제를 결정함.

〈附表 I -9〉 納稅者의 損害賠償

초과 납부한 세금(과세관청의 착오 때문에 초과 납부한 세금을 포함하여)의 환급에 덧붙여 이자지급 또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납세자들은 정부가 납세자에게 지불할 의무를 지고 있는 부채와 세무담약을 상쇄하도록 허가받고 있습니까?

호 주	초과 납부액에 대한 배상		정부부채와 세무담약을 상쇄할:	
	이 자 ¹⁾	기타	일반적으로 허가됨	특정 조건하에서 허가됨
호 주	○ (환급이 국세청장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자유재량에 맡김)	×	×	×
오스트리아	×		×	×
벨 기 에	○ (납세자의 착오로 인해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	×	○ (그러나 부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 정지함)
캐 나 다	○		×	×
덴 마 크	○ (가납부된 세금의 4%) (다른 경우 월 1%)		×	×
핀 란 드	○, 7.5% (1991년의 결정에 관하여)		×	×
프 랑 스	○ (법정 이율)		×	× (공채 소유자는 제외)
독 일	○	×	×	×
그 리 스	×	×	○	-
아 일 랜 드	○ (이의신청에 의해 또는 신고납부의 경우 예정 세액의 과다 지불액에 따라)	×	×	×
이 탈 리 아	○ (6개월마다 4.5%)	×	× ²⁾	-
일 본	○ (7.3%)	×	× ³⁾	×
네 덜 란 드	○, 법정 이율	×	×	×
뉴 질 랜 드	○, 재판소나 법정에 성공적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 (20%)	×	×	-
노 르 웨 이	○ (8%)	×	×	부담액과 부채가 동등한 수준의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과 관련이 있을 때에만
포 르 투 갈	○ (환급이 과세관청의 착오로 인한 것인 경우)	×	×	부담액과 부채가 동일한 세금과 관련이 있을 때에만 국영사업과 다른 자산에 대한 배상금과 대비하여
스 페 인	○ (9%)	×	×	○
스 웨 덴	○ (1.9%) (2만 크로나 이상은 3.8%)	×	×	×
스 위 스	○ (5%)	×	×	×
터 키	×	×	○	×
영 국	○ (11.5%)	×	×	세무담약과 관련하여 부채가 확정되어 있고 납세자가 동의할 때에만
미 국	○ (1%, 미납부액에 대해 부과되는 이율보다 낮음)	×	×	일반적으로 ×

註: 1) 현행 이율은 괄호 안에 표시되어 있음.

2) 1988년부터는 세금공제액이 납세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을 요청하든지 또는 차기 납세액에서 동 금액을 공제하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음.

3) 이러한 이율은 국내 할인금리에 따른 것이지 세금에 종속되는 것은 아님.

〈附表 I - 10〉 租稅減免의 納期 後 申請

납세자가 납기일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경우 나중에 청구하도록 그에게 어떠한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까?

호 주	조세감면을 뒤늦게 청구하는 데 대해 편의를 봐주는 것이 가능함:		
	경정이 이루어진 이후 일정 기간내에 청구가 제기된 경우 밖에 의거하여	과세관청의 자유재량으로	경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해서 ¹⁾
오스트리아	특정 공제와 관련된 회계년도(종업원의 경우) 이후 두번째 해의 말일, 그리고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	×	○
벨기에	경정내용 통지 이후 6개월	예외적인 경우에 승인됨.	×
캐나다	×	예외적인 경우에 승인됨.	×
덴마크	×	○	-
핀란드	×	×	×
프랑스	×	예외적인 경우에 승인됨.	○
독일	경정내용 통지 이후 1개월	×	?
그리스	×	×	×
아일랜드	감면항목에 따라 2년에서 10년	예외적인 경우에 승인됨.	×
이탈리아	×	제한됨.	×
일본	×	×	×
네덜란드	경정일 이후 2개월	청구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5년 이내에 제기되었다면	×, 기한을 넘은 경우
뉴질랜드	×	예외적인 경우에 승인됨.	○
노르웨이	×	○	○
포르투갈	감면항목에 따라 30일에서 1년	×	○
스페인	×	×	○ (6개월 경과 후 6개월 동안에 걸쳐)
스웨덴	관련된 회계년도 이후 5년 이내	극히 제한됨.	행정법원이 이의신청의 배경을 인정해 줄 것임.
스위스	×	×	○
터키	경정일 이후 5년	예외적인 경우에 승인됨.	○
영국	감면항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야 할 기간의 말일로부터 1~6년	예외적인 경우에 승인됨.	조세감면 청구를 거부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반드시 최종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소해야 함(특정 상황에서는 3개월).
미국	보통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중에서 더 나중인 것. 특수한 경우에는 더 연장됨. 시한에 관한 법률은 특정 상황에서 완화될 수 있음.	×	-

註: 1) 기한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모든 국가에 있어 납세자가 조세감면의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附表 I - 11〉 行政訴訟의 法定費用 配分規則

소송 또는 행정사건에서 과세관청을 이긴 경우 납세자는 그가 지불한 비용에 대해 배상 받을 권리를 갖는데, 법정비용의 배분에 적용되는 규칙은 무엇입니까?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음:			
		납세자가 이의신청에서 승리함 ¹⁾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에서 승리함	
		법	행정재판소와 같은 다른 기관	법	행정재판소와 같은 다른 기관
호 주	보통 비용이 주어짐	240달러의 규정 수수료	×	×	×
오스트리아	○	×	×	×	×
벨기에	일반적으로 ○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	비용이 주어지지 않음	
캐나다	-법정의 자유재량으로 비용이 주어짐-		-비용은 주어지지 않지만 법정에서 형벌이 부과될 수도 있음-		
덴마크	○	×	×	×	×
핀란드	법정의 자유재량으로	법정의 자유재량으로	법정의 자유재량으로	법정의 자유재량으로	법정의 자유재량으로
프랑스	법정의 자유재량으로	○	-	×	
독일	○	○	×	×	×
그리스	○ (반드시 전액은 아님)	-	×	×	×
아일랜드	법정의 자유재량으로	×	×	×	×
이탈리아	×	×	×	×	×
일본	○, 변호사 수수료 제외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	×	×
네덜란드	○, 전체 또는 일부	○	×	×	×
뉴질랜드	○	×	×	×	×
노르웨이	○	일정한 조건하에서 비용이 주어짐	×	×	×
포르투갈	○, 변호사 및 관련된 수수료 제외	×	×	×	×
스페인	×	×	×	×	×
스웨덴	×	×	×	×	×
스위스	○	○	×	×	×
터키	법정의 자유재량으로	○	법정의 자유재량으로	○	
영국	○	×	×	×	×
미국	○, 주된 당사자가 정부의 입장이 실제로 정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 주된 당사자가 법정에서 정부의 입장이 실제로 정당하지 못했음을 입증한다면 특정 비용에 대하여			×

註: 1) 다른 사항이 지적되지 않는다면, ○는 '합리적인' 비용에 대한 배상으로 간주됨. 많은 국가에서는 특히 '판례가 되는' 소송사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비용 배분에 대해 납세자와 사전 합의를 도출해 내도록 허용함.

2) 변호사 비용과 전문가 비용간에 선택의 자유가 있음.

〈附表 I - 12〉 租稅赦免

조세사면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가장 최근의 사면은 언제 실시됐고 어떠한 형태를 취했으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조세사면이 활용됨	빈 도	형 태	평 가
호 주	○	1980년대에 2번	(i) 특별 사면계획의 관련자 (ii) 신고서 미제출자	-
오스트리아	○	1982	1979년 이전의 모든 납세 요구 형벌의 면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벨 기 에	○	1984/1985	일례로 무이자 정부사채에 투 자한다면, 소득은 면세가 됨.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캐 나 다	×	-	-	-
덴 마 크	×	-	-	-
핀 란 드	○	1982/1984	Surplus Interest Affairs 형벌의 면제	-
프 랑 스	○	1986(가장 최근)	불법 이민자: 불법적으로 해외 에 보유한 자본의 본국 송환에 대한 형벌의 면제	-
독 일	×	-	-	-
그 리 스	○	1988	납세신고서 정정과 함께 형벌 의 부분적인 면제	아직 명확하지 않음.
아 일 랜드	○	1988(가장 최근)	형벌 및 이자의 면제	매우 유익한 결과
이 탈 리 아	○	1982 1989	형벌의 축소 또는 철회	만족스러움(1982). 만족스럽지 못한 (1989).
일 본	×	-	-	-
네 덜 란 드	○	1934, 1940, 1945, 1955	1955, 납세신고서 정정과 함께 형벌의 면제	실망스러움.
뉴 질 랜드	○	1988	모든 조세 위반에 적용됨. 납기 후 지불액에 대한 벌칙을 제한 형벌의 면제	성공적임. 좋은 반응. 추정된 세금은 1,800 만 달러
노 르 웨 이	×	-	-	-
포 르 투 갈	○	1981/82/86/88	1988, 소득세 과세에 한정됨. 형벌은 철회되지만 이자는 지 불해야 함.	총 금액의 40%로 예 상됨.
스 페 인	○, 특정 조건하에서	1977(가장 최근)	1976년 이전에 지불된 세부담 액에 대한 형벌의 면제	-
스 웨 덴	매우 예외적인	일반 사면은 활용 된 적이 없음.	일반적: 형벌은 면제되지만 이 자는 지불해야 함.	한정된 경험
스 위 스	○	1969	일반적: 형벌의 면제	115억 스위스 프랑
터 키	×	-	-	-
영 국	×	-	-	-
미 국	(연방정부 단계에서)	-	-	-

II. 主要國의 納稅者權利憲章

1. 美國

미국 聯邦課稅廳인 내국세입청(IRS)은 1988년 8월 일반 납세자를 위한 선언서 「納稅者로서의 당신의 權利」(Your Rights as a Taxpayer)를 비전문적인 문체로 작성·발표하여 어떠한 권리가 納稅者에게 保障되어 있는가를 알리고 있다.

「納稅者로서의 당신의 權利」(Your Rights as a Taxpayer)

귀하는 納稅者로서 내국세입청(IRS) 직원으로부터 공정하고 전문적이며 신속하고도 정중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IRS는 귀하가 저희 課稅制度의 성실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두텁게 신뢰할 수 있도록 귀하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항상 이러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도 과세의 각 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하여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 申告書의 作成을 위한 無料의 情報提供 및 相談

귀하는 세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정보의 제공을 받고 상담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인 설명서에 덧붙여 납세용 서식의 제공 및 기타 여러 가지 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納稅者를 위한 刊行物〉

저희들은 다양한 제목의 100가지가 넘는 納稅者를 위한 정보출판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로서 간행물 910 「무료 세금서비스 안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하고 있는 무료 상담과 무료 출판물의 카달로그입니다. 귀하는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출판물, 어떠한 납세용 서식 내지는 설명서도 무료전화 1-800-TAX-FORM

(829-3676)에 전화하여 송부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相談〉

저희들은 많은 IRS 상담소에서 예약없이 세무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IRS의 Tele·Tax·System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제목에 걸쳐서 자동응답기 전화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ele·Tax의 전화번호와 제목의 一覽은 일정한 납세용 서식에 대한 설명서나 출판물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의 대부분은 브라이유 點字(신체장애자용 점자)와 스페인語로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귀가 불편한 분도 특수 전화기를 통하여 상담에 응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보제공용 비디오테이프를 준비하고 있으며,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귀하가 農家나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는 특정 그룹의 納稅者를 위하여 개설하고 있는 강습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의 자원봉사자의 협력을 얻어 무료소득세원조(VITA) 프로그램 및 노년자세무상담(TCE)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소득자 및 노년자를 상대로 納稅申告書 작성의 무료상담을 행하고 있습니다. 納稅者는 가까운 지역의 무료전화번호에 전화함으로써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納稅申告書의 寫本〉

과년도 納稅申告書의 사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 4506 「納稅申告書 사본 청구서」를 작성, 소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귀하는 신고소득액, 소득공제 종류, 신고서 기재세액과 같은 제한된 정보만을 입수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송 내지는 IRS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또는 지역의 무료전화번호에 전화를 하면 이들 정보를 무료로 입수할 수 있습니다.

■ 私生活權과 秘密의 嚴守

귀하는 자신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

니다. 귀하의 納稅申告書를 작성하는 자 또는 귀하를 대리하는 자는 귀하에 관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왜 귀하에게 정보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는 이유,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에 관한 저희들의 이용방법을 상세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나아가 귀하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情報의 相互利用〉

저희들은 법률에 따라 귀하의 세금에 관한 정보를 州의 세무당국과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법률상의 기준에 따라 사법부나 기타 연방기관과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조세조약상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외국정부와 함께 귀하의 세금에 관한 정보를 상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鄭重하고 配慮 있는 對應

귀하는 항상 IRS 직원으로부터 예의바르고 경의를 표하는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IRS 직원으로부터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에는 그 직원의 상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納稅者의 權利保護

IRS 직원은 納稅者로서의 당신의 권리에 관하여 설명하고,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응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느낄 때에는 그 문제에 대하여 그 직원의 상사에게 상담하여 주십시오.

■ 苦衷申請

귀하가 어떠한 이유로 IRS에 대해 고충이 있는 경우 귀하의 지역 세무서장 내지는 서비스센터장에게 서한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기록된 무료전화번호에 전화를 하면 그의 성명과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 代理와 記錄

귀하가 저희들과 교섭할 때에는 귀하 자신이 설명할 수도 있으나, 귀하가 부재시에는 통상적으로 정식의 위임장에 의해 대리시킬 수 있습니다. 면담을 할 때에는 입회인을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가 納稅申告書의 조사 내지 세액징수 관련 면담중에 변호사·공인회계사·등록대리인 혹은 納稅者의 대리를 허가 받은 자에게 상담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면담을 중단하고 새로이 일정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行政召喚狀에 의한 것일 때에는 저희들은 면담을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귀하는 항상 IRS의 징수관 내지 조사관과의 면담을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면담녹음의 청구는 서면으로 면담 1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는 자기의 녹음기를 지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면담을 녹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에는 면담 10일 전에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귀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저희들의 녹음사본을 입수할 수 있습니다.

■ 適正한 稅額의 納付

귀하는 법률에 의하여 지급해야 할 최소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스스로 사업상 및 개인상의 재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적정액의 세금에 한하여 지급할 義務가 있을 뿐입니다.

저희들의 목적은 모든 納稅者에게 법률을 일률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 申告에 관해 問題가 있는 경우

저희들은 대부분 納稅者의 納稅申告書를 신고한 그대로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귀하의 신고서에 대해서 조회를 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귀하를 불성실하다고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회 또는 조사한 결과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

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은 어떤 변경도 가하지 아니하고 귀하의 사안을 종결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귀하는 환급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書翰에 의한 調査와 照會〉

저희들은 서한만에 의한 조사 및 조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상세한 설명을 구하는 서한 혹은 저희들이 신고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를 기술한 서한을 보내는 일도 있습니다. 귀하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시하거나 또는 설명하는 경우에 저희들은 귀하의 의견에 동의할 수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귀하가 납득할 수 없는 점에 대하여 저희들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한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면담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IRS 및 법원을 통하여 쟁송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개별 조회 내지는 간행물 1383 「서한과정」을 통해서 지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面談에 의한 調査〉

저희들이 개인면담을 통하여 조사할 것을 통지한 경우 또는 귀하가 그러한 면담을 요구한 경우 귀하는 조사가 귀하 및 IRS 쌍방에 있어서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하는 시간 또는 장소가 부적절한 경우 조사관은 보다 적절한 시간 또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조사를 행하는 방법, 일시, 장소의 최종결정은 IRS가 합니다.

귀하는 면담에 앞서 또는 면담을 할 때 納稅者로서의 권리와 조사진행 방법에 관한 설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동의할 수 없을 때 귀하는 조사관의 상사와 면회하여 귀하의 사안에 관해 다시 상의할 수 있습니다.

〈再調査〉

저희들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 재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 2년 내의 어느 해에 동일 사항에 대해 조사를 했고, 또한 귀하의 조세채무에 아무런 변경도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속히 저희들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은 재조사를 그만둘 것인가 여부를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更正의 說明〉

저희들이 귀하의 납세신고에 대해 경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그 이유를 충분히 납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불분명한 점은 무엇이든 주저 말고 물어 주십시오.

〈延滯利子〉

귀하는 추정세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이자는 통상 納稅申告書의 기한으로부터 계산됩니다. 저희들의 잘못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지연을 초래한 경우로서 극히 불공정한 때에는 저희들은 연체이자의 감액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연의 원인이 단순한 절차상 내지 직무상의 행위에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되며, 판결의 집행 내지 재량권 행사에 있을 때에는 제외합니다. 귀하는 그러한 지연의 원인이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조사관과 상의한 후 환급청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事業者〉

귀하가 개인사업자인 때에는 이 출판물에 게재된 권리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귀하가 조합체의 구성원이거나 또는 소규모 사업법인의 주주인 때에는 당해 조합체 또는 법인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시 특례의 적용이 있습니다. 조합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는 간행물 556 「納稅申告書의 조사, 불복청구권 및 환급청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간행물에 게재된 권리는 면세단체나 종업원복지후생계획기금의 가입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 調査結果에 관한 爭訟

귀하가 조사관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조사과정에서 이 권리에 대한 정보를 부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행물 5 「불복하는 사안에 관한 쟁송권 및 심사청구절차」는 귀하의 쟁송권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쟁송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관하여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不服審理部〉

귀하는 IRS 내의 불복심리부를 통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툼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법심사가 아닌, 이 불복심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복심사에서 귀하가 만족스러운 해결을 얻지 못한 때에는 사안을 법원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法院에서의 訴訟〉

귀하가 우선 다툼의 대상이 된 세금을 납부했는가 아닌가에 의해 연방 조세법원, 연방청구법원 중 어느 한 곳에 訴求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은 IRS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귀하는 스스로 법정 에 출석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의 辯護事務가 인정된 자에게 귀하를 대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추정세액을 납부할 義務가 있는가의 여부를 다룰 때에는 그리고 아직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안을 연방조세법원에 訴求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통상적으로 귀하에게 추정세액을 납부할 義務가 있다고 하는 정식 통지(일반적으로 「不足稅額通知」라고 부른다)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연방조세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안이 그액 면에서 문제된 기간 동안 또는 연간 1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소액분쟁처리절차를 통해 해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하에서 처리된 사안에 대하여는 抗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세액을 전액 이미 납부한 때에는 환급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귀하는 불복심리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가 불복심리부의 재결에 승복할 수 없거나 또는 저희들이 청구를 6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안을 연방청구법원 또는 연방지방법원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訴訟費用的 補償〉

법원이 사안의 쟁점에 대하여 귀하의 불복을 인정하고 저희들의 견해가 대체로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귀하는 일정한 행정상의 비용 및 소송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IRS 안에 준비되어 있는 모든 행정상의 구제조치를 이용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IRS의 불복신청제도를 경유하고 또 사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저희들에게 제공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간행물 556 「納稅申告書의 조사, 불복청구권 및 환급청구」는 귀하의 쟁송권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公正한 租稅徵收

귀하에게 納稅義務가 있는 때에는 항상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귀하가 납부할 세액과 연체이자 및 가산세의 액수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귀하가 받은 납부서가 정당한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납부서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귀하는 이를 訂正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납부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신속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이 귀하에게 신고서의 계산 내지 기재에 잘못이 있어서 세금의 납부가 필요함을 알릴 때에는 귀하는 정식의 통지서(「부족세액통지서」)의 발행을 저희들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것이 있으면 귀하는 그 세액에 대하여 다툼 수가 있습니다. 귀하

가 잘못을 알고부터 60일 이내에 정식의 통지서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서에 추징세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세액이 정당한 경우에는 귀하에게 그 전액을 납부하기 위한 특별한 기한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그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한 때에는 저희들은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합니다.

저희들은 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면담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귀하는 면담에 앞서서 또는 면담을 할 때 귀하의 권리 및 징수절차에 관한 설명을 받습니다.

저희 IRS는 직원의 근무평점에 징수실적을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귀하의 권리가 한층 더 보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税金支給의 合議〉

납부서의 전액을 납부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전액을 납부할 수 없으면 가능한 한 많이 납부하고 나서 저희들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귀하가 그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충분한 재무서류의 제출을 원하게 됩니다. 귀하의 재무상태 여하에 따라서 분납의 형태로 합의되든가 급여로부터 원천징수하는 형식으로 합의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은 귀하와 교섭한 내용 전문의 사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그 합의는 다음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귀하가 정확하고 충분한 재무정보를 제출할 것.
- 귀하가 각각의 分納額을 기한까지 지급할 것.
- 귀하가 다른 세금에 대해서도 기한까지 그 義務를 다할 것.
- 저희들이 세금징수의 위태로움이 없다고 판단할 것.

저희들은 귀하의 최근 재무상태를 검토하고 귀하와의 납부합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와의 납부합의에 대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30일 전에 통지하고, 또한 저희들이 어떠한 이유로 변경하려고 하는가를 알려드립니다.

저희들은 귀하와의 연락에 노력하고, 또한 지급해야 할 세액을 귀하가 자발적으로 납부할 기회를 부여한 후가 아니면 어떠한 체납처분(租稅先取特權의 등기, 재산의 압류 내지는 환가 등)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저희들이 서한, 전화 내지 개인방문에 의해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그에 신속히 응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귀하의 응답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은 체납처분을 개시하는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先取特權의 解除〉

(지급해야 할 세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귀하의 재산에 선취특권을 인정해야 할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은 다음의 사실을 인정한 때에는 그 후 30일 이내에 선취특권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귀하가 본세의 금액과 附帶稅를 납부한 때, 그 부과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본세와 부대세를 보증하기 위한 담보제공을 저희들이 받아들였을 때 등입니다.

〈損害賠償의 請求〉

저희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조세선취특권의 해제를 태만히 하거나 저희들의 태만에 의하여 귀하가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경우 또는 세금징수에 관한 법률이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실제로 받은 경제적 손해액 및 일정한 부담액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상황에서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손해액과 부담액은 다음의 조건하에서 인정됩니다. 즉, 귀하는 이용가능한 모든 행정상의 구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귀하가 도리를 다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손해액에서 제외됩니다. 귀하는 그러한 행위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잘못된 租稅先取特權의 設定〉

귀하는 저희들이 과오로 조세선취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저희들의 연방조세선취특권의 설정통지에 불복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 저희들이 그 과오를 인정할 때에는 저희들이 과오로 선취특권을 설정했다는 요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해제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선취특권은 다음의 경우에 과오로 인정됩니다.

- 저희들이 선취특권을 설정하기 전에 이미 귀하가 납세액의 전액을 지급한 경우
- 저희들이 선취특권을 설정하기 전에 징수세액의 시효가 만료된 경우
- 저희들이 조세부족액의 결정에 있어서 절차적 과오를 범한 경우
- 저희들이 파산절차에 있어서 자동 집행정지조건에 위반하여 세액의 결정을 한 경우

〈押留〉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0일간의 유예를 두고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그 통지는 귀하에게 우송되거나 타택 또는 근무처에 보내지거나 직접 만나서 교부합니다. 귀하가 소환장에 의해 징수면담에 응하면 세금의 징수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없는 한 저희들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은 없습니다.

〈押留禁止財産〉

저희들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도 귀하는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의류 및 교과서
- 일정한 개인적 소유물, 가구, 업무용 서적 혹은 전문서적 및 사업도구
- 실업수당 및 직업훈련수당, 노동재해급부, 사회복지수당, 일정한 장애급부금 및 일정의 연금급부금
- 법원이 명령한 양육비의 지급상 필요한 소득
- 우편물
- 귀하의 概算控除額 및 인적공제액을 52로 나눈 금액에 해당하는 週間所得金額 및 귀하의 주된 주거. 단 세금의 징수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혹은 세무서장(또는 부서장)이 문서로 압류를 허용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귀하의 은행계좌가 1989년 6월 30일 이후에 압류된 경우에는 은행은 압류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좌를 21일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귀하가 그 계좌자금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989년 6월 30일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압류의 대상이 된 본세, 가산세 및 연체이자를 납부한 경우
- IRS가 압류를 해제하는 편이 세금징수가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압류의 대상이 된 세액에 대하여 분할납부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 IRS가 그 압류로 인하여 경제적 곤궁을 야기시켰다고 판단하는 경우
- 그 재산의 공정한 시장가격이 압류가액을 초과하여 해제가 세금의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추측되는 경우

귀하는 세금징수 과정에 있어서 징수관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수관의 상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귀하는 60일 안에 이를 경매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60일보다 장기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정부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귀하의 요구에 응합니다.

〈귀하의 個人住居에의 出入〉

귀하의 재산을 압류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징수관은 법원의 명령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택이나 사업소의 비영업용 장소 같은 개인적인 주거에 대하여는 IRS 직원의 출입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직원이 그 곳에 출입할 수 있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源泉徵收〉

법인이 그의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를 저희 IRS에 납부한 것을 귀하가 확인하는 입장에 있고, 그러한 세금이 납

부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저희들은 그 불납세액의 납부를 귀하에게 기대하게 됩니다. 귀하가 자기에게는 이러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 건에 대하여 징수관의 상사와 상담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이 雇傭稅의 결정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심사를 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귀하는 다른 納稅者와 마찬가지로 IRS에 대해 불복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조세법원은 이러한 안전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방지방법원 또는 연방청구법원에 그러한 안전으로 제소하기 위해서는 귀하는 적어도 문제의 원천세의 일부를 납부한 후에 환급청구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귀하가 고용주에게 제출하는 서식 W-4 「피고용자 원천증(부양공제신고증)」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증서가 부정확한 경우 IRS는 귀하의 고용주에 대해 원천세를 더 징수하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가산세를 과세합니다. 귀하는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혹은 환급청구를 한 후에 연방청구법원이나 연방지방법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간행물 586A 「징수절차(소득세 계좌)」 및 간행물 594 「징수절차(고용세 계좌)」는 세금의 징수절차상에 있어 귀하의 권리를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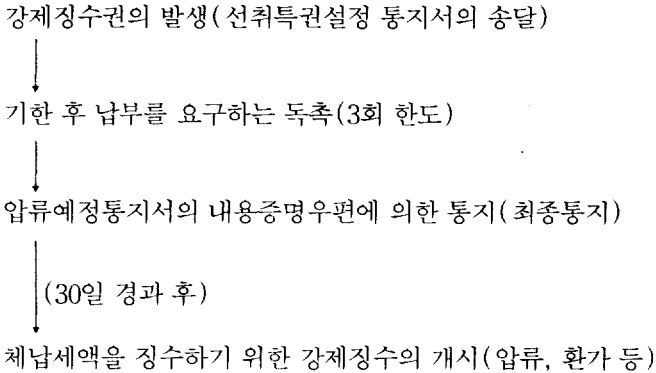
■ 稅金의 徵收節次

세금의 체납처분절차를 어느 단계에서 정지시키든 귀하는 세금의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가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저희들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 세금의 체납처분절차

첫회 통지와 체납세액의 독촉

↓ (10일 경과 후)



■ 過納稅金の 還給

세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세액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귀하는 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귀하가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귀하가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이내(그 중 늦은 것)에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저희들이 귀하의 청구를 조사할 때에는 귀하의 신고서 조사에서와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還給加算金〉

귀하의 신고일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일 중 늦은 날로부터 45일을 초과하여 행하는 소득세 환급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還給金の 確認〉

통상 귀하가 신고한 후 약 6주 후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귀하가 신고서를 우송한 후 8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무료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전화(Tele Tax)번호는 신고서 용지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다른 연방관청에 대해 채무가 있다든가, 자녀의 부양의무가 있다든가 하는 이유로 저희들이 귀하의 환급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저희들은 이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액의 원인이 된 채무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에는 해당 관청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加算稅의 取消

귀하는 가산세의 원인이 된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혹은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것, 그리하여 그것이 가산세 과세여부에 대한 기준이 됨을 증명하는 경우) 일정한 가산세(단, 연체이자를 제외한다)를 취소(감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989년 1월 1일 이후 서면요청에 의해 IRS가 행한 서면지도가 부정 확하고 귀하가 그것을 신뢰한 경우 저희들은 그 결과로 과세된 모든 가산세를 취소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 및 지도를 받은 후에 스스로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귀하의 問題解決을 위한 特別相談

저희들은 IRS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納稅者를 위해 고충처리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세금문제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문제를 야기시킨 세무서 혹은 서비스센터의 고충처리국에 서한을 보내 주십시오. 귀하는 地區 IRS의 納稅者救濟 전화번호에 전화하는 방법으로도 고충처리국과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청각장애자이며 TV전화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에는 1-800-829-4059로 전화해 주십시오.

귀하의 세금문제가 특별한 곤란을 수반(또한 수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때에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곤란이 수반된다고 함은 귀하가 식량, 의류, 교통수단 및 의료처치 등 생활필수품을 유지할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구제조치를 신청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식 911 「곤란해소를 위한 납세자구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는 1-800-TAX-FORM(829-3676)에 전화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귀하가 곤란해소를 위하여 1-800-829-1040 번호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納稅者 옴부즈맨, 고충처리 또는 기타 직원이 귀하의 사안

을 조사하고, 납세자구제명령(TAO)을 발취하여 IRS의 처분을 일시 정지시킵니다.

■ 納稅者를 위한 相談電話番號

지방전화번호부의 백색 페이지에 게재된 미국의 정부, 내국세입청, 연방납세상담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특정 번호가 게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료전화번호 1-800-829-1040으로 전화하십시오.

서식 1040의 해설에도 이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충처리국에 연락할 때에도 이 전화번호를 사용합니다. 전화를 할 때 고충처리국을 호출해 주십시오.

해외에 있는 미국의 納稅者는 다음의 주소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Attn: IN: C: TPS
950 L'Enfant Plaza South, S.W.
Washington, D.C. 22024

納稅者는 각각의 지역에서 어떠한 서비스와 신고용 서식이 이용되는가에 관한 정보를 근처의 미국대사관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2. 英國

영국은 1986년 7월에 「납세자헌장」(Taxpayer's Charter)을 공포하였으며, 1991년 8월에는 1986년 憲章(舊憲章)을 發展·繼承하는 形態로 「新納稅者憲章」(New Taxpayer's Charter)을 공포하였다.

「新納稅者憲章」(New Taxpayer's Charter)

■ 귀하는 課稅廳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 ① 공평하게 받을 것, 다시 말해서
 - 귀하가 세금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받을 것.
 - 귀하는 法律下에서 義務가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불을 요구 받을 것.
 -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공평함을 가지고 취급받을 것.
- ② 원조받는 것, 즉
 - (저희들이) 귀하의 稅金問題를 옹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 귀하가 자신의 權利와 義務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 간결한 설명서와 서식을 준비하는 것.
 - 귀하에게 저희들의 相談所에서 情報와 援助를 제공해 주는 것.
 - 항상 예의바르게 노력하는 것.
- ③ 效率的인 서비스를 받을 것, 즉
 - 귀하의 稅金問題를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받을 것.
 - 귀하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엄격하게 비밀을 보호받을 것.
 - 귀하가 저희들에게 제공한 정보를 어디까지나 법률이 인정하는 範圍 內에서 이용할 것.
 - 法律執行에 협력하기 위한 귀하의 비용이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할 것.
 - 저희들의 비용이 감소하도록 노력할 것.
- ④ 저희들의 책임소재를 명시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 내부의 기준을 설정하고 또한 저희들이 얼마나 이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가를 공표하는 것.

■ 귀하가 납득하지 않는 경우에

- ① 저희들은 귀하가 어떻게 불평신청을 하면 좋은가를 올바르게 알려드립니다.
- ② 귀하는 자기의 세무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는 독립적인 심판소에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④ 귀하는 국회의원을 통해 옴부즈맨에 대해서 불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저희들은 귀하에 대해서 다음을 부탁드립니다.

- ① 성실할 것.
- ② 저희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
- ③ 귀하의 세금을 기한까지 납부할 것.

3.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1984년 연방의 政權交替가 이루어졌다. 현 집권당(진보 보수당 : PCP)은 政權引受 전부터 前 政權(자유당 : LP)하에서의 비민주적 · 강압적인 세무행정을 비판해 왔다. 이에 현 정권은 정권획득 후 이전부터의 주장에 따라 즉시 광범위하게 세무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개혁에 착수하였다.

이 개혁에 해당하는 지침으로서 1985년 2월 28일에 聯邦 財務部 長官은 「納稅者 權利宣言」(Declaration of Taxpayer Rights)을 制定 · 公布하였다.

「納稅者權利宣言」(Declaration of Taxpayer Rights)

가. 前 文

캐나다 憲法 및 法律은 所得稅의 문제에 대해 귀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권리를 귀하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그 權利를 알고 그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審査를 받을 權利가 있고 동시에 公平하게 取扱받을 權利가 있습니다.

귀하가 스스로의 權利를 사용할 때에 이것에 協力하는 것은 國稅廳 管轄 稅務署 職員의 중요한 職務입니다. 不平申請에 대해서 공정한 취급을 받는 것은 귀하의 가장 중요한 권리의 하나입니다.

나. 本文

國稅廳의 모든 직무 수행에 관하여 공정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情報 提供

귀하는 정부가 所得稅法 및 그 외의 法制下에서 귀하의 권리에 관한 충분하고 정확하며 동시에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을 행하기 위해 가능한 한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 公平

귀하는 稅額을 法律 및 사실에 따라서 공평하게 결정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고 세입성 직원은 적정액만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鄭重하고도 配慮있는 對應

귀하는 國稅廳에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과 검사에 응하도록 요구받는 경우를 포함해 언제나 정중하고 배려있는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誠實性의 推定

귀하는 불성실하다고 보이는 증거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프라이버시와 秘密의 保護

귀하는 헌법 및 法律上의 권리에 덧붙여 國稅廳에 제출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법률에서 인정된 목적에만 이용되어야 하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獨立的인 審査

귀하는 법률의 적용에 誤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査定通知 내지는 再査定通知에 대해서 불복신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査定通知 내지는 再査定通知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不服申請이 행해지면 세입성의 심사관에 의한 독립적인 심사가 개시됩니다. 심사관은 그 문제를 귀하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귀하가 법원에 호소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 未納付 상태에서의 公平한 審判

귀하는 1985년 1월 1일 이후 국세청 혹은 법원으로부터 공평한 심판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정식적인 불복신청에 있어서 소송하고 있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급법원에 抗訴하는 때는 이 징점금액의 지불을 대신하여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 제소가 불성실한 것일 때 또는 분명하게 緊急徵收가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예외적인 취급이 이루어집니다.

■ 2個 國語 併用서비스

귀하는 공용언어법(영국, 프랑스)에 따라 어느 쪽의 공용언어로도 國稅廳과 교섭할 수 있으며 또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기타

귀하는 법률이 인정하는 모든 權益을 누릴 수 있는 權利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신의 세금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최소한도를 지불하는 형태가 되도록 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정부에 대해서 세법을 차별 없이 집행하고 또한 법률상의 義務의 이행을 회피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세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프랑스

프랑스 대장성은 「세무조사에 관한 헌장」(Charte du Contribuable Vérifié)를 1974년에 제정하고 1975년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헌장을 제출한 배경에는 附加價値稅(VAT)의 도입에 의한 增稅, 脫稅의 增加에 따르는 稅務調査의 강화 등으로 인한 불만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초 이 헌장은 비교적 간결한 것이었다. 그러나 개정을 반복함에 따라서 단지 납세자의 권리 등을 서술하는 선언서가 아니게 되었다. 다양한 통지서의 서식 등도 삽입되어 아주 두꺼운 선언서가 되었다. 그 제목도 바뀌었다. 더구나 租稅節次法典(1982년) 제10조 제4항에서는 세무행정청으로 하여금 세무조사에 앞서 이 憲章을 피조사자인 납세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納稅者憲章－稅務調査받을 때 당신의 권리와 의무」(Charte du Contribuable-Vos droits et obligation lors d'une Vérification)

同意에 의거해서 과세하지 아니하면 民主主義가 아닙니다. 이 원칙은 헌법의 관점에서 말하면 국회는 프랑스 人權宣言에 의거해서 稅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원칙은 또한 세금이 존재하는 경우 이것에 의해서 納稅者에게 부과하여지는 義務를 納稅者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어떠해야 합니까?

納稅者는 公共의 負擔이 公平하게 부과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納稅者는 세무행정청이 납세신고제도의 기능을 관리하는 것을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納稅者는 자기들의 市民的 權利－즉, 개인의 자유, 자신의 권리를 지킬 권리, 불복신청의 권리, 공정한 제재가 행해지는 것－가 尊重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法律은 이러한 納稅者의 義務와 權利 사이의 均衡을 지키는 것을 使命으로

하고 있습니다.

本 憲章은 귀하가 통지를 받은 조사의 全期間에 걸쳐서 귀하가 누릴 수 있는 保障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 뉴질랜드

뉴질랜드 내국세입청(Inland Revenue)은 주로 소득세와 물품 및 서비스세(GST)의 집행에 종사하고 있으며 稅務行政에 대한 국민,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그 역할과 서비스 방침 등을 명확하게 한 다양한 宣言書를 공표하고 있다.

1986년에 공표한 내국세입청의 「목적, 원칙 및 실행에 관한 선언」(Statement of Purpose, Principles and Practice, 이하 PPP선언)은 그 경향이 가장 두드러진 예의 하나이며, 1990년에는 내국세입청의 不平處理 서비스부(Problem Resolution service)에서 일반 납세자를 위한 「세금에 대해서 불평은 없습니까?」(Tax Problems?)라는 선언서를 준비함으로써 납세자 권리의 존중을 제일로 하는 稅務行政의 確立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1994년에는 「納稅者로서 당신의 權利와 義務」(Your Rights and Obligations)를 제정·발표하였다.

「納稅者로서 당신의 權利와 義務」(Your Rights and Obligations)

■ 良質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權利

귀하는 내국세입청으로부터 신속하고 친절하며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秘密保障을 받을 수 있는 權利

저희는 귀하께서 저희에게 제공한 정보를 존중하며 오직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 信賴를 받을 수 있는 權利

다르게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저희는 내국세입청과 관련된 귀하의 행동에 대하여 귀하가 정직하다고 추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희는 귀하가 저희에게 제공한 정보를 검토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 個別的인 配慮를 받을 수 있는 權利

귀하는 귀하와 관련있는 세무행정 직원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權利

저희는 귀하가 귀하의 권리를 이해하고 귀하의 義務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귀하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 內國稅廳의 決定에 대해 異意를 提起할 수 있는 權利

만약 귀하께서 요청한다면, 저희는 저희가 내린 어떤 평가나 결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 稅務調査를 받을 때의 權利

만약 귀하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 저희는 귀하의 권리와 귀하에게 부과된 義務에 대해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 정직하게 행동해야 할 義務

귀하는 내국세입청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게 행동해야 할 義務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納稅申告書上에 귀하의 모든 소득을 신고함으로써).

6.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내국세입청(Inland Revenue)은 1993년 「納稅者權利憲章」(The Charter of Rights)을 제정·발표하였다.

「納稅者權利憲章」(The Charter of Rights)

課稅官廳의 納稅業務 處理時에 귀하는 다음과 같은 權利를 갖게 됩니다.

■ 鄭重하고 配慮 있는 待遇

課稅官廳 직원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때 귀하는 정중하고 사려 깊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正直性 전제

귀하의 행동은 정직한 것으로 간주되고 과세관청이 법에 의거하여 확인해야 할 사안이 없다면 귀하의 납세업무는 정직한 것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情報의 公開 및 提供

귀하는 세법에 관하여 시기적절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그 법에 근거한 귀하의 權利 및 義務事項에 대해 완전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課稅官廳 직원들은 귀하에게 귀하의 납세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실과 충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公平性

세금징수를 하는 課稅官廳 직원은 공평한 방식에 의해 귀하의 납세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 私生活權과 秘密保障

귀하가 제공한 개인정보 및 사업정보는 엄격히 취급되어야 하며 법이 허가한 목적에 의해서만 활용될 것입니다.

■ 獨立된 審査要請

귀하가 판단컨대 법이 온당치 못하게 적용된 경우 세금납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귀하의 사안에 대해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課稅官廳 직원들에 의해 문제가 만족할 만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면, 법에 의해 귀하는 독립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 納稅順應費用

課稅官廳 직원들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귀하가 세법을 준수함으로써 부당하게 되는 비용(납세순응비용)도 최소한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 一貫된 行政

법적으로 정당한 세금납부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 課稅官廳은 단호하고 일관되게 법을 적용·시행할 것입니다.

■ 저희의 目的

課稅官廳의 목적은 공공에게 가장 효과적인 方法 및 최소비용으로 세금 및 기타 추징금들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먼저 課稅官廳이 성실성·효율성 및 공정성으로 높은 대중적 신뢰를 얻고 다음으로 納稅者들이 세법을 자발적으로 준수토록 노력을 기울이는 方法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습니다.

7. 日本

「納稅者의 權利宣言(1986년 2월 사단법인 自由人權協會 발표)

■ 最低生活費 등에 課稅받지 아니할 權利 등

(1) 모든 納稅者는 平等하며 그의 세부담 능력에 따라 納稅義務를 부담하고(應態負擔의 原則), 세부담능력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어떠한 差別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納稅者는 법률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納稅義務를 진다.

(3) 어떠한 課稅도 納稅者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最低限度의 생활(生存의 自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適正節次를 받을 權利

(1) 모든 納稅者는 課稅를 위한 조사를 받을 때 당해 조사에 대해 사전에 통지를 받고, 조사의 필요성·범위에 대해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課稅를 위한 조사는 조사를 시작할 때 설명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3) 課稅를 위한 조사는 헌법 제35조(영장주의) 및 제38조(묵비권)의 보장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4) 모든 納稅者는 세무행정처분을 받을 때 事前에 해명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당해 처분의 구체적 理由와 根據를 문서로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違法한 課稅處分 등에 대해 救濟를 받을 權利

(1) 모든 納稅者는 행정불복신청 등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대하여 위법한 課稅處分 등에 대해 司法的 救濟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課稅處分の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 등에 있어서는 다투고 있는 課稅處分の 이유·근거가 직접 제시되며, 제시된 이유·근거가 위법인 때에는 그 課稅處分은 취소되어야 한다. 소송 등에 있어서는 제시된 이유·근거 이외의 사항을 爭點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 租稅徵收의 方法과 用途 등을 統制할 權利

(1) 모든 納稅者는 헌법 및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불공평한 稅制 및 稅務行政에 대하여 법원에 그 違法의 確認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納稅者는 조세가 헌법 및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절차 또는 목적에 支出되는 때에는 직접 법원에 당해 財政支出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또는 당해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자기의 納稅義務의 배제를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 勤勞所得 納稅者의 權利

(1) 勤勞所得者인 納稅者(샐러리맨 納稅者)는 다른 소득의 納稅者와 동등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勤勞所得 納稅者는 소득세의 納稅申告權을 가진다.

(3) 모든 勤勞所得 納稅者는 그 소득을 얻는 데 소요된 經費의 實額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 納稅者의 私生活權 保障

(1) 納稅者에 대한 조사는 부당하게 納稅者의 사생활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2) 納稅者에 관한 情報은 공적 입장에 있는者に 관계되는 것을 제외하고, 公開 또는 流用해서는 아니된다.

(3) 모든 納稅者는 언제든지 자기의 納稅情報 등을 檢索하고, 情報保管者에 대해 不當한 정보의 廢棄·訂正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情報의 公開 및 財政過程에 참가할 權利

(1) 모든 納稅者는 租稅·財政에 관한 일체의 立法過程에 대해 전면적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이 정하는 적정한 節次에 의해 이에 참가할 수 있다.